



# 제1장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오정화·박영실

## 제1절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제사회는 향후 15년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새로운 발전목표 설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9월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를 개최하여 새로운 개발목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이하 ‘2030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였다.

‘2030 의제’는 2016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되며, 향후 15년간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의사결정의 지침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별 현실, 역량, 발전수준을 고려하고, 국가별 정책과 우선순위를 존중하면서 의제 실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21항), 향후 15년간 ‘2030 의제’ 이행의 체계적인 후속조치 및 검토에 참여할 것을 국제사회는 결과문서를 통해 약속하였다(72항).

새로운 의제는 이행수단으로 통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48항). 또한 향후 15년간 개도국과 선진국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제3차 개발재원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데이터, 모니터링과 후속조치’를 행동분야 중 하나에서 대분류 항목으로 승격시킴으로써,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공개를 강조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환경, 사회, 경제를 포함하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통계사회는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프레임 및 지표개발을 논의 중이다. 또한 데이터, 모니터링과 책무성을 담고 있는 SDGs의 세부목표 17.18과 17.19는 SDGs 이행수단으로써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 생산 및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SDGs의 다양한 분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역량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제통계사회는 ‘2030 의제’가 통계시스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림 1-1] SDGs 도해

이에 따라 한국 통계청도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대두되었으며, 효과적인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먼저 국제적으로 진행되어온 ‘2030 의제’ 채택 과정을 살펴보고, 관련문헌 특히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의제’의 최종문서를 중심으로 ‘2030 의제’의 의미, 지향점 그리고 ‘2030 의제’에서 필요한 통계 및 전체적인 통계의 역할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2030 의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선정 과정과 국가, 지역, 글로벌, 주제별 모니터링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글로벌 및 국가수준 지표작성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통계현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및 국가지표 작성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SDGs에서 통계적 이행과제를 담고 있는 세부목표17.18 및 17.19를 중심으로 통계청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제2절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 1. 개요

#### 가. 의의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190여 개 회원국의 동의로 채택된 ‘2030 의제’는 서문, 선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후속조치와 검토로 구성되어 있다.

‘2030 의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평화의 강화, 빈곤근절을 필수요소로 보고 있다. 세계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누구도 뒤에 남겨지지 않을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 즉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 향후 15년간 인류와 지구를 위한 주요영역의 활동이 촉진될 것이며, 이에 대한 기본가치는 인류(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이다(서문).

‘2030 의제’는 21세기 인류와 지구를 위한 헌장임을 강조하고 있다(51항). 특히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 의회, 유엔시스템 및 기타 국제기관, 지역당국, 토착민, 시민사회, 비즈니스 및 민간 학계 등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본 의제는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성공할 것임(52항)을 선언하고 있다.

〈표 1-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결과문서 구성양식

서문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	
선언	도입	1-6
	우리의 비전	7-9
	우리의 공유된 원칙과 약속	10-13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재	14-17
	새로운 의제	18-38
	이행수단	39-46
	후속조치와 검토	47-48
	우리 세상의 변화를 위한 행동의 요청	49-53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	54-59항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60-71
후속조치와 검토		72-77
	국가 차원	78-79
	지역 차원	80-81
	글로벌 차원	82-91

## 나. 현황

현재 세계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수십억 인구가 여전히 빈곤상태에 있고, 존엄한 삶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내외 불평등 증가 등이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으며,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다(14항). 그러나 한편으로 현대 사회는 수억 명의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청소년 교육의 기회가 개선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지식사회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15항). 이러한 상황에서 SDGs는 MDGs를 넘어 빈곤종식, 보건, 교육, 식량안전 및 영양 등 계속되는 개발 우선과제와 더불어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적을 제시한다(17항).



## 다. 이행의 기반

본 의제는 국제법, 유엔헌장의 목적 및 원칙,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 새천년 선언문, 2005 세계정상회의문서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10항, 19항), 모든 국가의 유엔헌장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19항),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맞추어 추진될 것(18항)이다.

의제수립에 기여하고, SDGs의 기반이 되는 주요 유엔회의는 환경 및 발전에 관한 Rio 선언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인구발전 국제회의의 실천 계획(베이징 액션 플랫폼),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등이다. 이들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제4차 유엔 최빈국 컨퍼런스, 제3차 소도서 개발도상국 국제 컨퍼런스, 제2차 내륙 개발도상국회의, 제3차 유엔 재난위험감소 국제회의 등이 있다(11항).

특히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포함한 ‘환경 및 발전에 관한 Rio 선언문’의 모든 원칙을 재확인(12항)하였으며, 36항에서는 공동의 책임(Shared Responsibility)을 선언하였다.

## 2. 결과문서 주요 쟁점

‘2030 의제’는 8차에 걸친 정부 간 협상을 통하여 채택되었으며, 협상과정에서 중국 및 77개 개도국과 선진국측은 주로 5개 부문에서 의견대립을 보였다. 선진국측은 공동의 책임(Shared Responsibility)을 강조한 반면, 중국 등 개도국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Common and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대원칙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참여한 대립 끝에 결과문서 12항과 36항에 각각의 원칙을 분리하여 언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선진국 진영은 이행수단 관련 기술에 있어 개발재원회의 프로세스에서 합의되었던 사항 중 ODA 및 기술촉진메커니즘(TFM) 등만 부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논의결과를 더욱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강하게 제기한 바, 기존에 제시되었던 국내재원 및 민간재원 관련 조항들이 개도국이 희망한 무역, 부채 관련 조항들과 함께 다시 포함되었다.

약 20여 개의 세부목표에 대하여 구체화, 측정가능성, 국제협정 준수 등의 목적으로 변경제안이 있었으나, 8차간 이루어진 협상과정에서 채택과 제외과정이 반복되다가 결국 x% 처리된 부분에 한해 변경이 수용되었다.

지표를 의제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지표는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의해 결국 세부목표까지만 결과문서에 포함

되었으며, 지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문가기구(IAEG-SDGs)에 의해 개발되고, 2016년 3월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75항).

〈표 1-2〉 ‘2030 의제’ 결과문서 주요 쟁점

	G77/중국 등 개도국	EU 등 선진국	최종안
서문 (Preamble)	모든 이슈들이 선언에 반영, 중복 회피 차원에서 불필요	5P 개념 틀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 서술	포함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BDR)	공통의 책임 (Shared Responsibility)	Rio Declaration 및 CBDR 12항 36항 : ‘공통의 책임 (Shared Responsibility)’
세부목표 수정안	처음에 본문통합 반대 최종 X% 처리된 세부목표들에 한해 수용	본문에 통합	X% 처리된 세부목표들에 한해 수용
OWG 보고서 두문	결과문서 본문에 반영	두문을 목표 부분에 통합하는 것에 반대 (방대하므로)	미반영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반영 문제	양자는 별개이며 유엔총회 결의로 승인된 동 행동의제를 결과문서 부록으로 취급할 수 없다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는 Post-2015 이행수단과 불가분 관계로서 Post-2015 결과문서에 첨부	개발재원회의 결과문서에 Post-2015 이행수단 세부목표를 보완하고 맥락에 연계 (contextualize)
다양한 개발재원의 균형적 서술	무역, 부채	이행수단 관련 기술이 개발재원 프로세스에서 합의되었던 사항 중 ODA 및 TFM 등만 부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논의결과를 더욱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함(국내재원, 민간재원)	국내재원 동원(61항), 민간재원(62항), 무역(64항), 부채(65항) 관련 조항을 재삽입



### 3. '2030 의제' 진행과정

‘2030 의제’ 논의과정은 두 개의 축으로 시작되었다. 하나의 축은 2010년 유엔사무총장이 MDGs를 대체할 Post-2015 의제 구상을 촉구하며 시작되었으며, 또 다른 축은 2012년 6월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SDGs 수립을 합의하고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SDGs를 위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OWG)을 통해 제시하였다.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던 논의는 2014년 9월 UN총회에서 SDGs-OWG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20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결과문서 “2030 의제”를 채택함으로써 그 논의가 완성되어 향후 15년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표 1-3〉 ‘2030 의제’ 논의과정

구분	2010	2012	2013	2014			2015	
Post-2015	Post 2015 개발의제 구상촉구 (65차 유엔총회, 9월)	UN System Task Team 결성(1월) 새로운 의제 방향 설정	유엔사무총장보고서 (9월) Post-2015 구상발표		유엔총회 OWG보고서 채택(9월)	유엔사무총장보고서 발간(SDGs 필수 6대 요소 제안, 12월)	제8차 정부 간 협상 (1~8월)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 (9월) 2030 의제 결과문서 채택
SDGs		지속가능발전회의(리우+20, 6월) SDGs 수립합의	공개작업반 OWG 구성 (1월)	OWG보고서 17개 목표 169세부 목표 초안 제시(7월)				

Post-2015 논의의 시작은 2010년 9월 제65차 UN총회에서 ‘유엔사무총장에게 Post-2015 개발의제 구상을 촉구하면서 시작되었으며(결의문(A/RES/65/1): “Keeping the promise: united to achieve the MDGs”, para.81), 2012년 1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작업반(UN System Task Team)을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엔작업반의 주요 보고서로는 기본원칙 및 프레임을 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의 실현(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2012. 5.)”, MDGs를 보완하는 이행 파트너십에 관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A Renewed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2013.3.)”, 지표 및 모니터링 요건을 담고 있는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통계와 지표(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3. 7.)”가 있다.

2012년 7월 유엔작업반은 보고서,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실현(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을 채택하고, 3대 기본원칙(인권, 평등, 지속가능성)과 4대 핵심 요소(포괄적 경제개발, 포괄적 사회개발, 평화와 안보, 환경지속가능성)를 제시하였다.

2012년 7월 Post-2015의 구체적 논의를 위하여 우리나라 김성한 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27명의 세계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 HLP)이 발족되었다. 고위급 패널은 Post-2015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고, 다섯 차례에 걸친 유엔고위급패널회의(UN HLP)를 통해 5대 핵심권고사항, 12개 목표, 54개의 세부목표를 포함하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빈곤퇴치와 경제 전환(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c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2013.5.)”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2년 8월 반기문 사무총장은 UN의 행동의제를 지원하도록,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을 독립적으로 발족시켰다. 이 기구는 제프리 작스(Jeffrey Sachs) 교수 주도로 학계, 시민단체,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의제(Action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3. 6.)와 SDGs를 위한 지표(Indicators for SDGs, 2014. 3.) 등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Post-2015 의제 설정과정을 지원하였다.

2013년 9월에는 유엔사무총장보고서 “모두를 위한 존엄한 삶: MDGs를 향한 진보의 가속화와 2015 이후 UN 개발의제(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DGs and Advancing the UN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를 발간하여, Post-2015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2030 의제’에 대한 논의의 다른 한 축인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SDGs 수립을 합의(2012.6.)하고,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으며, 2014년 7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안하였다.

2014년 9월 UN총회에서 OWG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Post-2015와 SDGs 두 개의 축으로 논의되던 Post-2015 논의는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12월 SDGs 공개작업반의 결과물이 국가차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유엔사무총장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6대 필수요소로 존엄, 번영, 인류, 정의, 지구, 파트너십을 제안하였다.

2015년 7월 13일에서 16일까지 진행된 제3차 개발재원총회에서는 지구적 프레임워크, 행동분야, 행동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데이터, 모니터링과 후속조치) 등 총 3부분 134개 조항을 통해, 향후 15년간 S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협력해야 할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가 채택되었다.



〈표 1-4〉 UN SDGs 보고서 6개 요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6개 요소	지속가능발전목표	
존엄(Dignity)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영양강화, 지속가능농업
	5	양성평등/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6	물 및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
	8	지속가능경제성장/양질의 일자리
	10	불평등 감소(국내, 국제)
	11	포괄적, 안전적, 지속가능도시
정의(Justice)	5	양성평등/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16	안정적 평화적 사회/포괄적 제도
파트너십 (Partnership)	10	불평등 감소(국내, 국제)
	17	글로벌 파트너십
인류(People)	3	건강한 삶, 웰빙
	4	포괄 형평적인 양질교육/평생교육
	5	양성평등/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6	물 및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
	10	불평등 감소(국내, 국제)
	17	글로벌 파트너십
지구(Planet)	7	지속가능에너지
	9	지속가능산업/혁신추구
	12	지속가능소비/생산패턴의 보장
	13	기후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촉구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및 해양자원의 절약
	15	지속가능육지생태/산림/사막화방지
번영(Prosperity)	5	양성평등/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8	지속가능경제성장/양질의 일자리
	9	지속가능산업/혁신추구
	10	불평등 감소(국내, 국제)

2015년 Post-2015 논의는 제1차 이행점검(1.19~21), 제2차 선언문(2.17~20), 제3차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3.23~27), 제4차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4.20~24), 제5차 후속 조치 및 평가(5.18~22), 제6~8차 결과문서 문안 협상(6.22~25, 7.20~24, 7.27~31)의 주제로 이루어진 8차의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2015년 9월 UN총회에서 190여 회원국의 합의로 결과문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였다. 여기서 Post-2015 의제는 “203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로 그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다.

## 제3절 지속가능발전목표

### 1. 지속가능발전목표 개요

‘2030 의제’ 결과문서 59항 이후에 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보편적 의제의 규모 및 계획을 보여주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확장 및 완성을 지향한다. 이는 개도국과 선진국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2030 의제’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수평적 관점을 확보하며, 빈곤, 삶의 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5〉 지속가능발전목표

- Goal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한다.
- Goal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와 영양증진을 달성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한다.
- Goal 3.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웰빙을 증진한다.
- Goal 4. 포용적이고, 평등하며,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 Goal 5.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 Goal 6. 모든 사람의 물과 위생시설의 가용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
- Goal 7.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하고, 신뢰할 만하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 방식의 에너지 접근을 보장한다.
- Goal 8.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모든 사람에게 온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 Goal 9.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며, 혁신을 육성한다.
- Goal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인다.
- Goal 11. 도시와 거주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만든다.
-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보장한다.
-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한다.
- Goal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사용한다.
- Goal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재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에 맞서 싸우고, 토지 황폐화를 중단 및 복원시키며, 생명 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킨다.
- Goal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든 이들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Goal 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출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결과문서



2000년 제55차 UN총회에서 개최된 새천년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채택된 2015년까지 15년간 국제개발의 지침이 된 MDGs와 비교하여 본다면, MDGs는 사회개발 및 빈곤퇴치에 중심을 두고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 60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UN 및 OECD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준비가 되었으며, 개도국에 중심을 두고 수립되었는데, 환경적 이슈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SDGs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하는 보편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사회, 경제, 환경을 포괄하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행을 측정하는 지표는 현재 220여 개가 논의되고 있다. 통계의 부족으로 MDGs 이행에 있어 한계<sup>1)</sup>를 경험한 국제사회는 그 목표가 훨씬 광대한 SDGs 이행을 위해서 통계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2] MDGs와 SDGs 비교

1) IEAG에 MDGs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09년 지표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70%(IEAG(2014), p.12; 김찬유, 2015 재인용)임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는 사회, 경제, 환경을 포괄하는 특징을 지으며, 그 주요 특징을 기반으로 사회, 경제, 환경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분야의 목표로는 빈곤퇴치(목표1), 기아종식(목표2), 보건(목표3), 교육(목표4), 양성평등(목표5)이 있다. 빈곤퇴치를 목표1에 배치함으로써 최우선의 목표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임을 나타냈으며, MDGs에서는 극빈제거(Eradicate extreme poverty)가 목표였다면, SDGs는 빈곤종식(End poverty)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절대적 빈곤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까지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불평등해소, 성장과 고용, 산업화, 지속가능성에도 연계되는 목표이다. 사회분야의 목표는 대부분 MDGs에서 담고 있었던 목표들로서 목표의 확장 및 완성을 지향하며 설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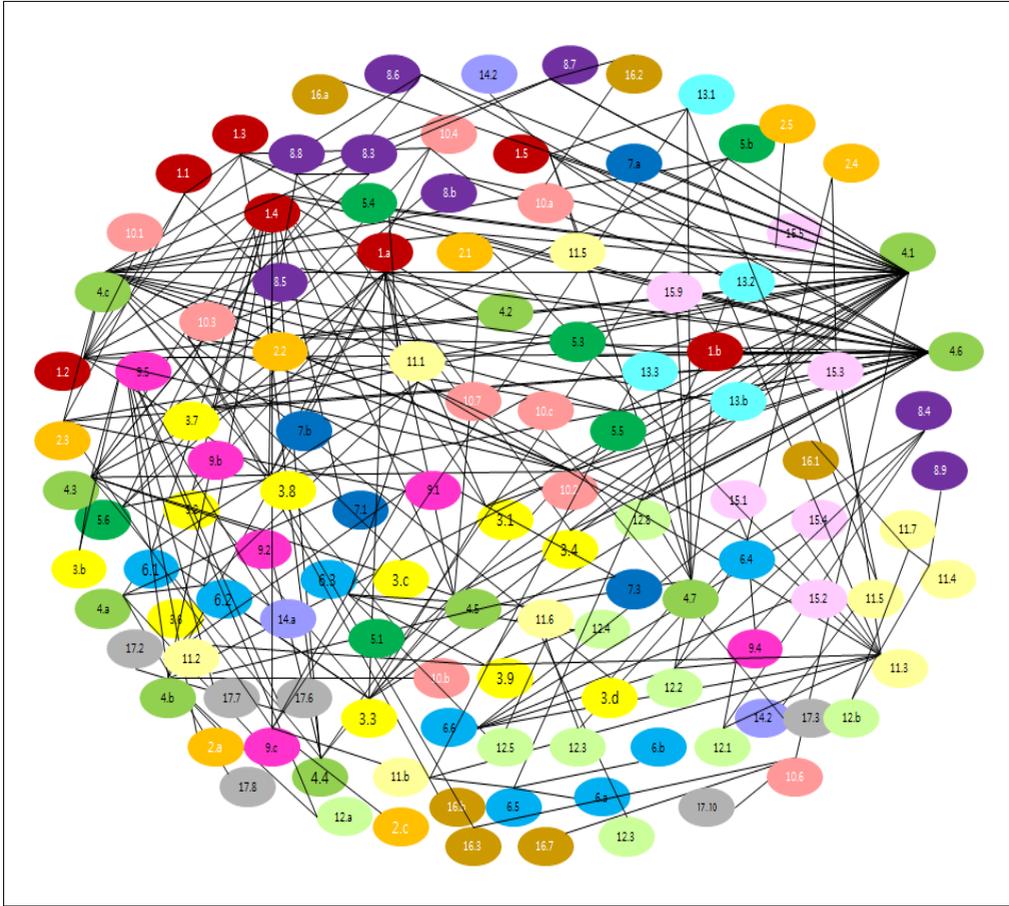
경제성장과 고용(목표8), 산업화 혁신추구(목표9),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목표12)은 경제 분야 목표로 MDGs에서 포괄하지 않고 SDGs에 새로이 담겨지는 분야이다. SDGs를 관통하는 목표는 지속가능성이다.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물 및 위생(목표6), 에너지(목표7), 기후변화대처(목표13), 해양생태계(목표14), 생물다양성(목표15)이다.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목표로서 제도부문을 담고 있는 목표16과 글로벌 파트너십과 이행수단을 담고 있는 목표17이 있다.

##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분석

### 가. 세부목표 간 관계

SDGs 17개 목표는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목표는 각 목표별로 이행해야 할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차 IAEG-SDGs회의의 지표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 1-3]에서 보듯이 세부목표 간 배타적이지 않고 연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문가 중심으로 목표 및 지표가 결정된 MDGs와 달리 SDGs의 목표는 다양한 참여자인 선진국과 개도국,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정치적 협상의 결정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제1차 IAEG-SDGs회의에서 이러한 세부목표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재해석하거나 저해하지 않고, 논쟁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지 않으며, 모든 세부목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지표를 개발하는데 합의하였다.

세부목표 간 관계도를 보면 목표4 세부목표4.1은 28개 세부목표와, 세부목표4.6은 23개의 세부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이는 교육목표의 이행이 다양한 목표이행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제1차 IAEG-SDGs회의 지표제안 리스트(172개, 15.6.기준) 기준으로 저자 작성

[그림 1-3] SDGs 세부목표 관계도

## 나. 세부목표와 국제협약

세부목표 169개는 모두 새로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합의된 다양한 국제협약을 담고 있다. 세부목표2b는 도하개발 아젠다, 세부목표3.6은 UNFIA 주관의 도로안전 10개년 계획, 세부목표3b는 WTO주관의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의한 도하선언문, 세부목표5.6은 UN-WOMEN 주관의 베이징행동강령, 세부목표8.4, 12.1은 지속가능소비와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10개년 계획, 세부목표11.b는 유엔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 세부목표13.a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세부목표15.3은 유엔사막화 방지협약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일부 세목목표의 경우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논의된 다양한 논의들을 다시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현재까지 논의되는 다양한 국제협약 등을 총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30 의제’ 실행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과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진행 중인 절차들과 연관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세부목표와 국제협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 3. ‘2030 의제’와 통계

‘2030 의제’에서 통계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지표는 포용성(No one is left behind)을 보장하고, 이행 진전도를 측정하기 위해 품질, 가용성, 시의성, 신뢰성이 요구된다. 데이터는 의사결정의 핵심이며, 가능한 경우 기존 보고체계상의 자료 정보를 활용(48항)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의 성격을 지니는 개발재원총회의 결과문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sup>2)</sup>’는 ‘데이터, 모니터링과 후속조치’를 행동분야 중 하나에서 대분류 항목으로 상승시킴으로써,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공개를 강조하고 있다. 공개적인 전자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와 통계가 의사결정에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국가 주도의 평가내용과 데이터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접근가능하며, 시의적절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소득((income), 성별(sex), 연령(age), 인종(race), 민족(ethnicity), 이주상태(migration status), 장애(disability), 지리적 위치(geographic location) 기타 국가별 주요 특징 등으로 세분화된 데이터는 ‘2030 의제’와 도입수단에 대한 지원과정 등에 중요하다. 국가통계시스템들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세분화하며, 관리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 시스템은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민간부문의 데이터와 분석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유엔사무총장이 Post-2015 의제 목표와 체계구축을 위해 설립한 Post-2015 의제 관련 고위급 패널(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의 보고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빈곤퇴치와 경제변혁(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Post-2015 의제 관련 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통계와 정보의 품질개선을 위한 “데이터 혁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후 유엔사무총장은 데이터 혁명을 위한 독립전문가자문단(IEAG: 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 in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설립하였고, “셀 수 있는

2) 자세한 내용은 <부록> 8.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참조



세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혁명 동원(A world that Counts: Mobilising the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4)”을 통해 데이터 혁명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은 ‘의사결정, 원조책임 및 개발 과제 해결에 필수적인 데이터들을 향상시킬 기회’이며, ‘고품질의 정보 생산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자료와 기존자료의 통합, 정보 공개 증대 및 투명성 향상을 통해 자료 활용 증가, 인간과 환경에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인력의 강화, 좋은 정책 결정, 참여와 책임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정부와 UN에게 국가 간, 사람 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간에 존재하는 데이터 접근 및 이용의 격차를 줄여 데이터가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sup>3)</sup> 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을 위해 동 보고서는 다섯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원칙과 기준에 대한 국제적 동의를 구축한다. 둘째, 공공재를 위한 기술과 혁신을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혁신 네트워크(Network of Data Innovation)’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역량개발을 위해 새로운 자원들이 투자되어야 한다. 넷째, 협력과 동원을 위한 리더십을 위해 UN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데이터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DG 데이터 관련 빠른 측정을 위해 최신의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여 SDGs 관련 지표나 데이터를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SDGs 데이터 실험실(SDGs Data Lab)’을 설립할 것을 제언하였다.

IEAG의 MDGs 데이터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DGs 55개의 지표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60%에 불과했으며, 2005년부터 2009년의 경우는 70%이다(IEAG, 2014: 김찬유, 2015, 재인용).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포함하는 SDGs의 성공적인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통계 및 통계청의 역량향상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IEAG(2014), p.5: 김찬유, 2015, No.2 개발협력이슈,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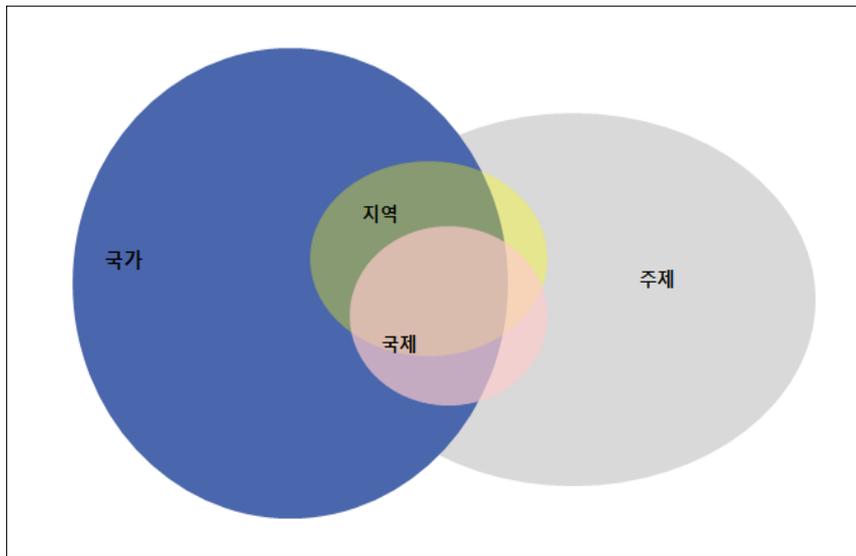
## 제4절 SDGs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 1. 개요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은 [그림 1-4]와 같이 국제, 국가, 지역, 주제별로 진행된다. 이를 통한 모범사례 공유로 상호 정보습득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 간의 상호 신뢰 및 이해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IAEG-SDGs는 2015년 1차 회의를 종료하고, 지표 프레임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통해 지표선정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글로벌, 지역, 국가, 주제별 지표를 포함한 통합 모니터링 프레임이 필요하며, 향후 15년간 지표를 개선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프레임은 적은(small) 수의 지표로 제한하며, 세부목표당 1개, 다차원 세부목표(예 3.3) 시 복수지표가 가능하다.

다수의 세부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다목적 지표(Multi-purpose)가 선정될 경우 지표수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합의된 기준에 근거하여 자료를 선정하며, 국가 공식통계를 이용한다. 기존의 통합 통계 프레임워크(국민계정, 환경경제계정 등)를 최대한 활용하며, 세부목표를 재해석하거나 저해하지 않으며, 이행수단을 포함하여, 모든 세부목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둔다. 또한 논쟁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출처: Indicators and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DGs, SDSN(March, 2015)

[그림 1-4] 국가, 지역, 글로벌, 주제별 모니터링 지표의 도식적 예시



## 2. 국가 차원

‘2030 의제’ 결과문서는 본 의제가 국가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국제적 세부목표의 적절한 차이를 고려하여 국가적인 세부목표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 차원의 문제들에 대하여 공약들을 검토하고, 이행수단에 대한 공급과 필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SDSN은 국가모니터링은 각국에서 우선권을 갖고, 국가지표의 수와 특성을 결정하며, 모든 국가지표가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지 않고, 제한된 국제모니터링 지표 세트가 국가모니터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식 자료원에서 유도될지라도, 비공식 자료원으로도 작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가모니터링 결과를 포함하는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는 지역 및 국제 차원의 이행경과 평가 및 도전과제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대하나 국제수준의 검토와 함께 다양한 수준의 권고안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77항) 한다.

〈표 1-6〉 ‘2030 의제’ 결과문서에서 국가주도적 이행을 강조한 문항

- 모든 국가가 부, 자연자원, 경제활동에 대한 자주권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행사할 것을 재확인 하며, 국제법을 준수함과 아울러, 모든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맞추어 추진하고(18항), 각국은 자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41항)을 지며, 국가 차원의 리더십을 강화한다(46항).
- 각국 정부는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목표와 세부목표 이행에 대한 후속조치와 검토를 수행할 일차적 책임을 지니며, 체계적인 후속조치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47항).
- 국가별 현실, 역량, 발전수준을 고려하고, 국가별 정책과 우선순위를 존중하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세부목표는 야심차고 글로벌하게 정의되었으며, 각 정부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세부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세부목표들이 국가적 계획, 정책 및 전략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을지를 결정해야 한다(55항).
- 국가별 상황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접근방식, 비전, 모델 등이 다를 수 있으며(59항) 자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과, 국가정책 및 발전전략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63항, 66항).
- 자발적인 국가 주도로 추진하되, 국가별 상황, 역량 및 개발 수준을 고려하고, 정책 분야 및 우선과제를 존중한다. 기존 플랫폼과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고부담을 감소시켜 후속조치와 검토를 갈수록 개선시킨다(74항).
- 모든 회원국이 같은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천가능하고 야심찬 국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며, 국가 주도하에 국가 및 하위지역 차원의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이행경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79항).

출처: ‘2030 의제’ 결과문서(15. 8. 2.)

### 3. 지역 차원

‘2030 의제’ 결과문서는 지역 차원의 모니터링에서는 자발적 검토, 모범사례 공유, 공통 세부목표 논의를 통해 상호학습에 대한 유용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국가 차원의 검토를 유도하고, HLPF 등 글로벌 차원의 후속조치 및 검토에도 기여하여야(80항)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DSN에 따르면 지역모니터링은 상호검토의 지역공유와 지역 간 상호학습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여야 하며, 의무적인 글로벌지표, 특정지역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작은 규모의 지표로 구성되며, 지역모니터링메커니즘은 기존 지역메커니즘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차원의 IAEG-SDGs 프로세스 지원을 위한 아태지역회의(UNESCAP 주관, 9.21 ~ 23.)가 방콕에서 열린 바 있으며, 동 회의에서 SDGs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 지표 프레임과 지표리스트 개발과정을 공유하고, IAEG-SDGs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역내 의견조율 및 차기 회의에 제출할 역내 회원국의 요구 사항을 검토한 바 있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 네트워크(중국, 일본, 몽골 등)를 의견개진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고, 한국의 모범사례 등을 전파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4. 글로벌 차원

SDSN에 의하면<sup>4)</sup> 국제모니터링은 공통된 국제기준에 적합한 국제모니터링지표 세트에 기반하여, 고위 정치적 포럼의 검토로 공식자료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으나 특정 지표(예: 말라리아는 온대지역 국가들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내륙국은 해양부문에 대해 보고할 수 없음)의 경우 일부 국가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030 의제’ 결과문서를 통해 살펴보면 국제모니터링은 HLPF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HLPF의 역할을 살펴보면 유엔총회, ECOSOC 관련 기구 및 포럼과 협력하여 글로벌 차원의 이행조치 및 검토과정을 감독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82항). HLPF는 ECOSOC 주관하에 정기적 검토를 수행하고(84항), 총회 주관으로 4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HLPF는 의제 및 이행에 관한 고위급 정치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차기 HLPF는 2019년에 개최될 예정이다(88항).

HLPF의 후속조치 및 검토는 사무총장이 UN 시스템<sup>5)</sup>의 협조로 작성하는 연간이행보고서(SDGs Progress Report)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연간이행보고서는 2016년 HLPF 세션의 장관급

4) SDAN, Indicators and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DGs, 2015. 4.

5) UN 시스템은 글로벌 국가체계 및 국가통계, 지역 차원에서 수집된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선언문에 반영할 예정이며, ECOSOC 의장이 보고서의 범위, 방법론, 주기 및 연간이행 보고서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실시할 것이다(83항).

〈표 1-7〉 글로벌 수준의 모니터링

HLPF	SDG 연간이행보고서 (SDG Progress Report)	UN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차원의 이행조치 및 검토 (82항)/ ECOSOC 주관하에 정기적 검토를 수행(84항)</li> <li>○ 범영역(Cross-cutting) 이슈를 포함하는 주제별(Thematic review) 검토 실시(85항)</li> <li>○ 의제 및 이행에 관한 고위급 정치 가이드를 제공(87항)</li> <li>○ 총회 주관으로 4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차기 HLPF는 2019년에 개최 예정(87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총장이 UN 시스템의 협조로 작성</li> <li>○ 2016년 HLPF 세션의 장관급 선언문에 반영예정</li> <li>○ ECOSOC 의장이 보고서의 범위, 방법론, 주기 및 연간이행보고서와의 관계 설정(83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국가체계 및 국가통계, 지역차원에서 수집된 통계에 기반함(83항)</li> <li>○ SDGs 달성을 지원함에 있어, 충분한 자원, 관련성, 일관성, 효율성 측면에서 UN체계의 주요역할 및 비교우위성을 강조(46항)</li> </ul>

## 5. 주제별 차원

‘2030 의제’ 결과문서는 주제별 차원의 모니터링에 대해 별도의 장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85항을 통해 HLPF가 범영역(Cross-cutting) 이슈를 포함하는 SDGs 진행에 대한 주제별(Thematic review) 검토도 실시할 것임을(85항) 합의하였다.

SDSN을 통해 주제별 모니터링을 살펴보면 지식공동체가 보고하는 전문적 지표로 구성되며, 공식지표를 유용하게 보완할 수 있는 투입과 과정지표를 포함한다. 많은 공동체들은 또한 다양한 소스의 비공식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 수집, 분석을 제시하는데 창조적이고 새로운 방법적 경험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녹색성장지표, 삶의 질 지표, 사회지표 등이 주제별 차원의 지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제5절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 1. 지표선정 과정

‘2030 의제’ 결과문서에 의하면 SDGs는 글로벌지표 세트를 이용하여 검토되며, 글로벌 지표 세트는 회원국가에서 개발할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지표와 국가 및 국제자료가 미 작성된 세부목표는 개발 결과의 표준으로 보완될(74항) 예정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글로벌 지표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8〉 지표선정 논의과정

일시	‘14. 10.	‘15. 3.	‘15. 6.	‘15. 9.	‘15. 10.	‘15. 11.
지표수	325개	304개	172개	204개	204개 및 대안지표	224개
쟁점	작성가능성 여부 조사	작성가능성 적합성 관련성 추가세분화	제1차 IAEG-SDGs 회의	온라인 협력 플랫폼	제2차 IAEG-SDGs 회의	녹색지표와 회색지표로 구분

#### 가. 325개 지표 논의( ‘14. 10.)

2014년 10월 UN통계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공개작업반<sup>6)</sup>에서 제안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 통계청의 자료이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목표17 ‘이행수단’을 제외한 16개 목표와 107개 세부목표에 대해, MDGs 지표, SDSN<sup>7)</sup>의 제안 지표 및 CES<sup>8)</sup>의 제안 지표에서 선정된 325개 지표에 대한 작성 가능여부를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결과 50% 이상(=56/107)의 세부목표에서 60% 이상의 국가가 지표 작성 가능하지만, MDG 모니터링체계에 포함되는 지표를 제외한 지표는 작성을 위해 통계 역량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고소득 국가는 목표9(지속가능산업/혁신추구) 목표7(지속가능에너지) 부문의 작성가능성이 높으며, 저소득 국가는 목표5(양성평등) 부문의 작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6) SDGs-OWG

7) 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Network

8) CES: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9) UNSD 1차 설문결과분석, 설문응답 국가 및 소득별 분류는 <부록> 3. 참조



## 나. 304개 지표 논의( '15. 3.)

정부 간 협상의 공동조정자(Co-facilitators)와 통계위원회는 UN통계처 제시지표에 대해, 각국의 기술적 평가 후 그 결과를 제3차 정부간회의(3.23-27.)에서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3월 UN통계처에서는 세부목표당 2개의 대표지표를 선정(일부 다목적 세부목표에 한해 2개 이상의 지표를 선정, 총 304개 지표)하여, 지표의 작성가능성, 적합성, 관련성, 성 및 연령 이외 추가 세분화 가능성에 대하여 수준별로 평가해 줄 것을 각국 통계청에 요청하였다.

(작성가능성) A: 작성용이, B: 어렵지만 가능, C: 매우 어려움  
 (적합성) A: 지표를 지지, B: 논의 및 다른 지표 검토 필요, C: 지표를 지지하지 않음  
 (관련성) A: 매우 적절, B: 다소 적절, C: 부적절  
 (추가 세분화 가능성) A: 작성용이, B: 어렵지만 가능, C: 매우 어려움

조사결과<sup>10)</sup>를 살펴보면 세부목표별 304개 지표 중 50개 지표(16%)가 AAA, 39개 지표(13%)가 BAA, 28개 지표(9%)가 BBA, 86개 지표(28%)가 BBB, 95개 지표(31%)가 CBB 등급을 받았다. UN통계처에서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172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제1차 IAEG-SDGs회의에 제시하였다.

AAA: 작성가능·적합·매우 적절, BAA: 어렵지만 가능·적합·매우 적절,  
 BBA: 어렵지만 가능·논의필요·매우 적절, BBB: 어렵지만 가능·논의필요·다소 적절,  
 CBB: 매우 어려움·논의필요·다소 적절

## 다. 제1차 IAEG-SDGs회의: 172개 지표 논의( '15. 6.)

그 동안 UN통계처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이후 논의는 SDGs를 위한 전문가 기구, IAEG-SDGs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IAEG-SDGs(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글로벌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지표모니터링을 위한 지표프레임워크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46차 통계위원회의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공동의장은 Ms. Fabiola Riccardini(이탈리아 통계청)와 Ms. Lisa Bersales(필리핀 통계청)이다. UN통계처는 각국에 IAEG-SDGs 멤버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후보군들 중에서 UN통계처에서 지역별로 멤버를 선정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회원국은 동아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오세아니아 피지 사모아이며, 남동아시아 필리핀, 남아시아의 회원국은 인도가 선정되었다.

10) UN통계처, Technical report, 2015. 2.

제1차 IAEG-SDGs회의는 2015년 6월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으며, 22개 IAEG-SDGs 대표국가에서 28명, 옵저버 및 국제기구에서 120명, 시민단체에서 80명 이상, 약 2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지표선정 과정, 세부목표 간 연계 및 자료세분화 관련 이슈,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회원국을 중심으로 172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20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 라. 온라인플랫폼: 204개 지표 논의( '15. 9.)

IAEG-SDGs는 제1차 회의 종료 후에 선정된 204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2015년 9월 온라인플랫폼을 열고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지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IAEG-SDGs는 설문에 앞서 지표작성에 관한 방법론 존재 여부 및 자료이용가능 여부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방법론이 존재하고 자료도 이용이 가능한 1단계 지표가 96개로 전체의 약 47.3%였으며, 방법론이 존재하나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는 지표가 77개 약 37.9%였으며, 방법론 개발이 필요한 3단계 지표는 30개로 전체의 약 14.8%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표 1-9> 참조).

〈표 1-9〉 제시된 지표 평가

Goal	Tier 1	Tier 2	Tier 3
1	3	3	2
2	6	4	0
3	15	5	0
4	3	2	5
5	4	7	3
6	5	5	0
7	5	1	0
8	7	8	0
9	6	4	0
10	6	3	3
11	4	5	2
12	2	6	3
13	1	2	2
14	3	2	5
15	8	6	0
16	5	10	2
17	13	4	3
합계	96 (47.3%)	77(37.9%)	30(14.8%)

Tier 1: 방법론 존재, 자료이용가능, Tier 2: 방법론 존재, 자료미존재, Tier 3: 방법론 개발 필요

출처: IAEG-SDGs 204개 지표 제안서, 16.b 지표평가 누락, 2015. 9.



204개의 제시된 지표를 3월에 제시된 304개와 비교하여 보면, 지표 중에 중복되는 것은 67개(32.8%)였으며, 63개(30.9%)가 신규지표, 74개(36.3%)의 지표는 수정 개선된 지표이다. 단시간에 많은 지표가 제시되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회원국은 피로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표 1-10〉 지표 분석

목표	1차 (304개)	설문제안리스트 (204개)			
		총	중복	신규	유사
1	10	8	1	3	4
2	12	10	4	4	2
3	22	20	5	8	7
4	15	10	1	1	8
5	18	14	6	2	6
6	10	10	4	3	3
7	10	6	5	0	1
8	22	15	5	4	6
9	16	10	2	4	4
10	17	12	2	6	4
11	20	11	3	1	7
12	21	11	7	2	2
13	8	5	3	1	1
14	20	10	4	4	2
15	24	14	11	2	1
16	21	18	1	8	9
17	38	20	3	10	7
합계	304개	204개	67개(32.8%)	63개(30.9%)	74개(36.3%)

온라인플랫폼은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아이디어를 부여하여 진행되었으며,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였다. 기존의 의견수렴은 설문형으로 진행된 반면 본 컨설팅은 오픈형으로 진행이 되었다. 페이스북처럼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모든 의견 제시자가 볼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동조, 반대 등에 대한 다른 의견을 다른 회원국에서 제시할 수 있는 대화형 채널로 구축되었다. 또한 오픈플랫폼 완료 후 취합된 의견을 회원국에 송부하였다.

이와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지표에 대한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빠른 시간에 모을 수 있었으며, 향후 국내에서 진행할 글로벌지표 개발에 부처의견 수렴 및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수렴에 유엔통계처에서 실시한 온라인플랫폼 벤치마킹을 고려 중이다.

### 마. 제2차 IAEG-SDGs회의

제2차 IAEG-SDGs회의에서는 204개 지표에 대한 온라인플랫폼 의견 결과에 따라 3단계로 지표를 구분(회색, 녹색, 노랑색)하고 평가된 지표에 대하여, 노랑색지표를 중심으로 채택할 것인지(녹색) 추가논의 할 것인지(회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표 1-11〉 지표 현황

구분	녹색(45%)	노랑색(40%)	회색(15%)
개요	일반적 동의	논쟁적 이슈/대안 지표 존재	심층토의 요망
향후 방향	‘15. 10.29.~11.20. IAEG-SDGs 회원국 협의*	2차 회의 시 집중 논의 녹색, 회색으로 재평가	‘15. 12.01.~‘16. 02.15. 지표보완하여 검토

회의 종료 3단계로 분되었던 지표는 <표 1-12>와 같이 2단계로 정리되었다. 2015년 12월 현재 유엔통계처에서는 IAEG-SDGs와 협력하여 녹색지표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회원국에 송부할 보고서 초안을 작성 중이다.

〈표 1-12〉 제2차 IAEG-SDGs회의 전후 글로벌지표 현황

목표	회의 시작			회의 종료		
	녹색	노랑	회색	녹색	회색	합계
1. 빈곤퇴치	0	5	3	6	3	9
2. 기아	4	5	1	10	5	15
3. 보건 웰빙	13	6	1	21	3	24
4. 교육	8	1	1	10	1	11
5. 양성평등	12	2	0	14	0	14
6. 물 및 위생	5	4	1	7	3	10
7. 에너지	2	3	1	5	1	6
8. 경제성장 고용	8	5	2	12	3	15
9. 산업화 혁신추진	9	1	0	11	1	12
10. 불평등감소(국내, 국외)	4	8	0	9	3	12
11. 지속가능도시	0	9	2	7	5	12
12. 지속가능소비/생산	7	2	2	7	5	12
13. 기후변화대처	1	3	1	1	4	5
14. 해양생태계	1	5	4	5	5	10
15. 육상생태계	4	8	2	8	7	15
16. 평화제도	6	8	4	13	8	21
17. 글로벌 파트너십	9	6	5	15	6	21
합		204개		161	63	224

2015. 11. 지표현황, 제2차 IAEG-SDGs회의 결과문서



## 바. 향후 일정

IAEG-SDGs에 의해 선정된 지표들은 2016년 3월 통계위원회에 상정되어 채택이 고려될 예정이며, 정부 간 협상을 거쳐 2016년 9월 UN총회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표 1-13〉 IAEG-SDGs 글로벌지표 프레임워크 작업 일정

○ '15. 1.1.: 최종 지표(안) 결정 및 통계위원회 제출
○ '15. 11.30.~12.07.: 회원국에 보고서 초안 제공
○ '15. 12.01.~'16. 02.15.: 회색지표를 보고서에 포함시킬지 여부 논의
○ '15. 12.07.~12.16.: 통계위원회 제공 보고서 최종안 마련
○ '15. 12.08: COP 21/Paris 회의결과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표 업데이트
○ '16. 1.: 고위급 미팅(IAEG-co chairs 참석)
○ '16. 3.08~11.: UN 통계위원회 47차 세션
○ '16. 3.: 제3차 IAEG-SDGs회의

## 2. 지표생산에 참여한 국제기구

지표선정에 참여한 국제기구를 IAEG-SDGs에서 온라인플랫폼에 제시한 204개 지표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약 68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목표별로는 평화제도부문을 담고 있는 목표16에 가장 많은 기구가 참여하였으며, 이들 기구는 본인들의 사업과 직결된 지표인 경우 본인들이 제시한 지표가 채택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1-14〉 세부목표별 지표선정에 참여한 국제기구 예시

목표	참여기구	참여기구 수
1	World Bank, ILO, OECD, UNDP, UNICEF, FAO, UNSD (EDGE), UNISDR, INFORMEA	9
2	FAO, UNICEF, WHO, World Bank, WTO, OECD	6
3	WHO, UNICEF, UNFPA, World Bank, UNDESA, UN Population Division, UNAIDS, UNODC, UN Road Safety Collaboration, OECD	10
	⋮	
17	IMF, OECD, World Bank, UNCTAD, WIPO, WTO, ITC, ITU, UNSD, OHCHR, UNEP, UNDP, UNFPA, DESA	14
총 68개 기관		

출처: IAEG-SDGs 204개 지표 리스트를 기준으로 작성(자세한 내용은 <부록> 5, 6. 참조)

## 제6절 글로벌 및 국가지표 작성 및 모니터링 전략

### 1. 개요

본 절에서는 ‘2030 의제’ 모니터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지표 작성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IAEG-SDGs의 기술보고서에 의하면 지표는 적절성 측면에서 세부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정책적으로 적절하며, 모든 수준(글로벌, 지역, 국가)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타당성 측면에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그 유용성이 검증되고, 타 지표와 비교하여 일관성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측정가능성에서 비용 효과적으로 고품질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 접근성 측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하여야 하며, 결과지향성 및 제한성 측면에서 글로벌지표는 개수를 제한하고, 결과 지향적으로 작성하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도록 지표프레임은 유연성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지표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지표를 우리나라 현황에 맞도록 단계별 작성전략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국내이행과제에 따른 국내지표 작성전략을 모색해볼 것이다.

### 2. 국내 통계현황 검토

‘2030 의제’ 지표작성을 위해 현재까지 검토한 자료는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국가승인통계, 한국의 사회지표,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 지속가능지표, 국제기구 제공 통계 및 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 시 필요한 통계지표 등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중에서 주요 지표만을 대상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15〉 ‘2030 의제’ 검토대상 통계 및 지표

- \* 국가주요지표 140여 개 지표(경제, 사회, 환경 16개 영역, 62개 하위영역, 통계정책과)
- \* e-나라지표 740여 개 지표(통계정책과)
- \* 국가승인통계(390개 기관 934종, 통계조정과, 5월 말일 현재)
- \* 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 시 필요한 통계지표, 행정통계(통계심사과)
- \* 한국의 사회지표(11개 부문, 266개 지표, 사회통계기획과)
- \* 삶의 질 지표(12개, 영역 80여 종, 통계개발원)
- \* 녹색성장지표(주 지표 22개, 보조지표 27개, 통계개발원)
- \* 지속가능지표(3개 분야, 77개 지표, 환경부, 2015년 지표개편 중임)
- \* 국제기구 제공 통계(26개 기관 작성, 70여 종, 국제협력과)



## 가. 국가주요지표

국가주요지표는 국가 발전의 주요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분야별로 핵심지표를 엄선하여 구축한 지표체계이다. 국민의 웰빙과 국가 발전(national progress)의 주요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환경 3개 부문 15개 영역 60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국민의 관심이 크고 주요 정책 수립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성과(outcome)중심 지표로 주요지표 139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 186개를 함께 제시하고, 이와 함께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국제비교지표 125개도 선정하였다. 국가주요지표는 향후 SDGs 국내부문에 대한 이행모니터링 지표작성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5] 국가주요지표 홈페이지

## 나. e-나라지표

e-나라지표는 정부기관에서 엄선한 지표들을 통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e-나라지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표들은 국가 공식승인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현황이나 각종 행정자료들을 가공한 내용들도 포함한다. 지표 분류체계에 따라 부문별, 부처별로 각 단위지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부문별 : 총량지표, 경제, 사회, 문화, 정부 등 각 부문별로 대·중·소 세 분류 단계별 접근>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수
합계	5	43	172	741

<부처별 : 대통령·국무총리 직속기관, 부, 청 등 소관 부처별 접근>

구분	합계	대통령 직속기관	국무총리 직속기관	부	청
기관수	38	1	7	17	13
지표수	741	2	90	492	157

e-나라지표는 지표수가 740여 개나 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부처의 지표 담당자가 지표를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 년 지표 입력 시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구축되어 있다. SDGs 이행모니터링 지표생산시스템 구축 시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e-나라지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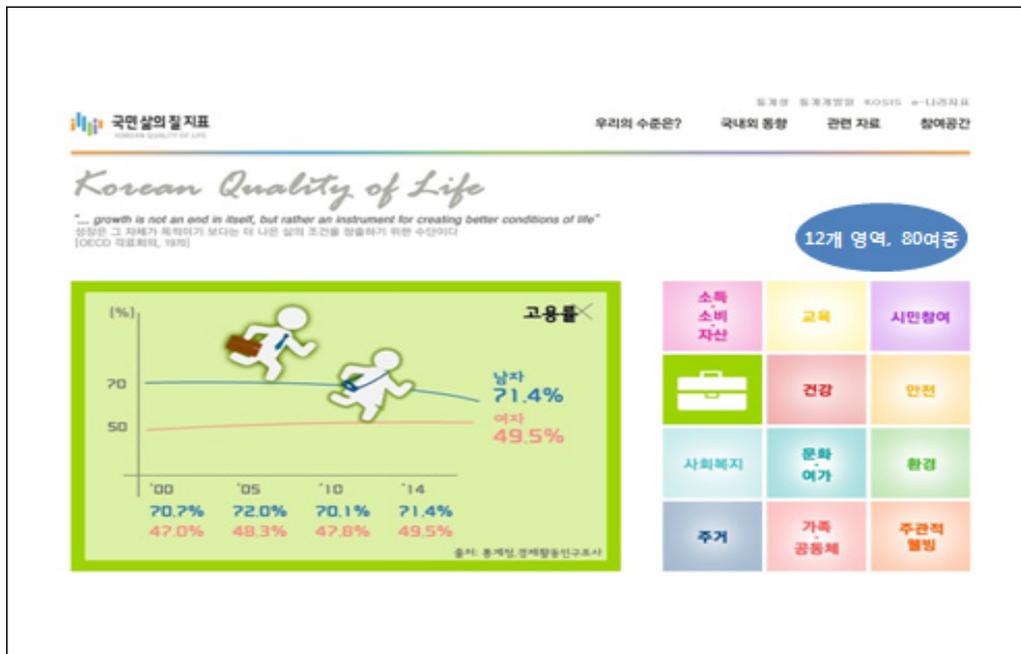


## 다. 삶의 질 지표

삶의 질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 조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 개인의 ‘삶의 질’과 함께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의 질’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12개 영역은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로 구성된다. 동심원 안에는 ‘개인’, 중간에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맨 바깥쪽에 ‘환경적 조건’이 위치하고 있다.

12개 영역은 소득·소비·자산, 건강, 사회복지, 주관적 웰빙, 교육, 주거, 고용·임금, 시민 참여,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환경, 안전이며, 2014년 기준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는 물질적 영역과 비물질적 영역을 포함하는 12개 영역에, 객관적 지표 57개, 주관적 지표 24개를 포함하여 모두 81개였으나 실제 2년 이상 자료가 구축된 70개만을 우선 공표하고 있다.

삶의 질 지표는 향후 SDGs 지표모니터링체계의 주제별 영역에서 상호 발전을 모색해야 할 지표로 판단된다. 특히 SDGs는 GDP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작성을 권고하고 있는데 삶의 질 지표는 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7]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 라. 녹색성장지표

녹색성장지표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성과 및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2011년 정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3대 분야 및 10대 정책방향’을 지표 틀로 채택하였으며 약 30여 개의 핵심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에는 그 중 2개의 지표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8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2015년에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년)에 의거한 체계 개선을 통해 총 22개의 주요지표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녹색성장지표는 ‘2030 의제’의 목표8 경제성장 및 고용에 해당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녹색성장지표 또한 ‘2030 의제’의 주제별 모니터링 분야로써 상호 발전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지표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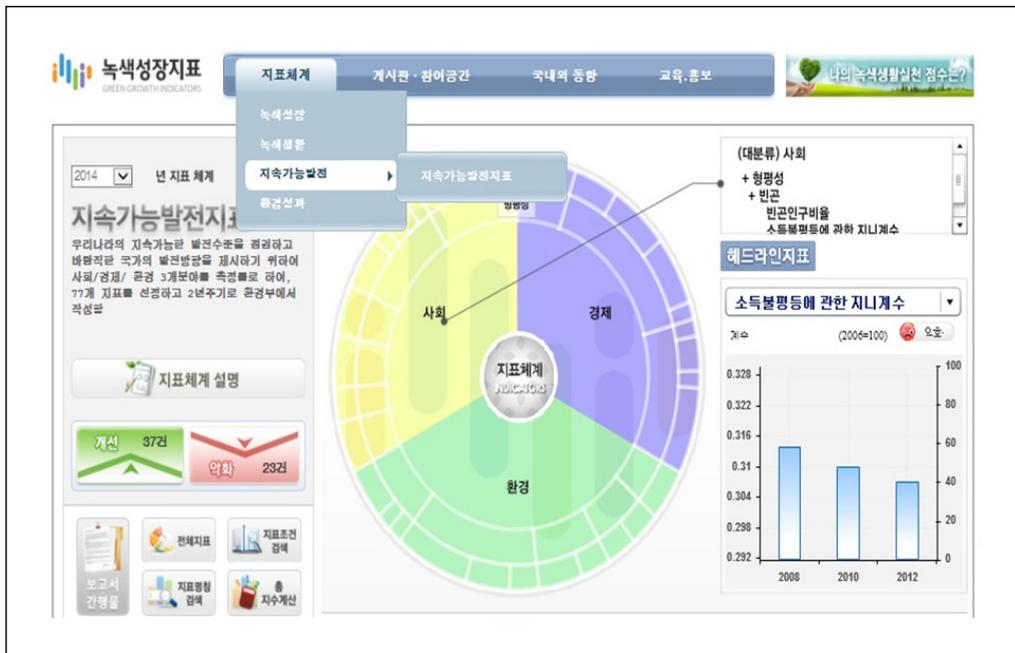


[그림 1-8] 녹색성장지표 홈페이지



## 마. 지속가능발전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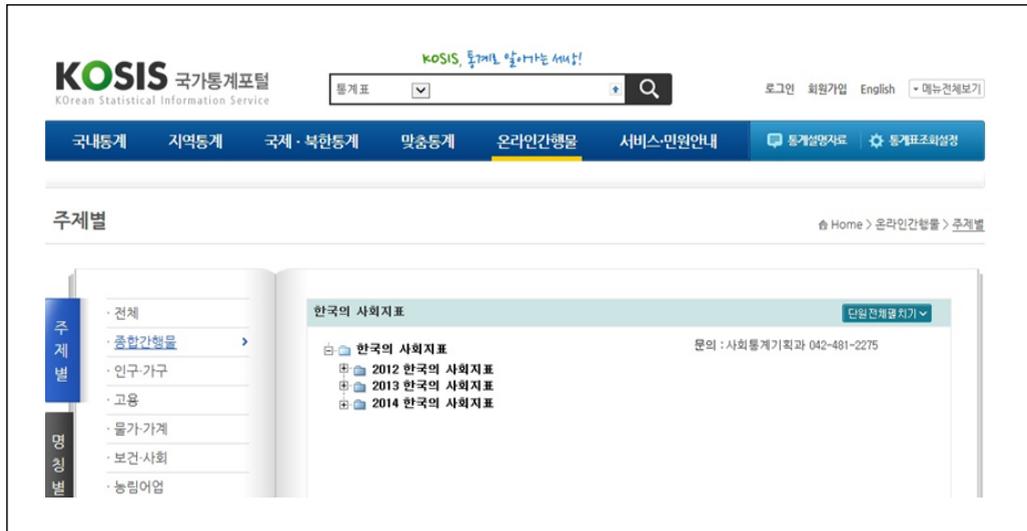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 경제, 환경 3개 분야를 측정 틀로 한 77개 지표를 선정하여 2년 주기로 환경부에서 작성한다. 2012년 지표체계에서는 1년 단위로, 2014년 지표체계에서는 2년 단위로 작성되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환경부산하)에서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림 1-9] 지속가능발전지표 홈페이지

## 바. 사회지표

사회지표는 종합적, 체계적, 균형적으로 현 사회의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정도를 파악하여, 기존 통계자료를 재분류하거나, 가공하여 작성한다. 주관적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사회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사회지표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통계포털의 온라인 간행물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그림 1-10] 사회지표 서비스 제공

## 사. 국가승인통계

국가승인통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제15조에 의해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작성한 승인통계이다. 2015년 9월 현재 인구, 고용·임금, 물가·가계소비 등 총 16개 부문에 939종의 통계가 작성되어 있으며, 작성기관은 총 393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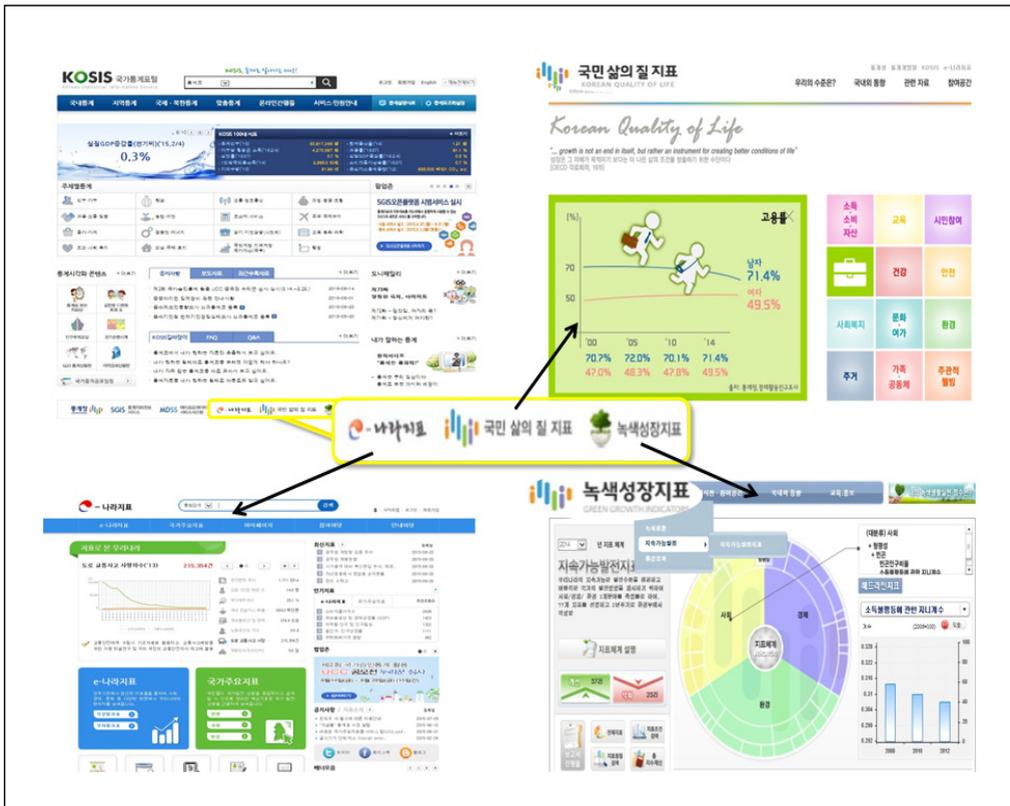
향후 ‘2030 의제’ 글로벌지표는 공식통계로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표작성에 이용되는 통계들이 공식통계가 아닌 경우 품질향상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아. 소결

현재까지 작성된 지표 등은 향후 SDGs지표 작성에 기반이 되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세부목표별로 현재까지 검토한 지표를 대상으로 연계시켜보면 빈곤퇴치(목표1) 및 보건분야(목표4)의 관련지표가 제일 많았으며, 전통적인 환경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물과 위생분야(목표6)와 생산 및 노동관련목표를 포함하는 산업화 혁신추진 분야(목표9)의 지표가 많았다. 반면 생물다양성(목표15), 지속가능소비 생산(목표12) 부문의 지표가 적음을 알 수 있다(세부목표와 기존지표 연계를 위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9. 참조).

글로벌지표 개발을 위해 현재까지 살펴본 다양한 지표 등은 각각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그림 1-11]에서 보듯이 국가통계포털(KOSIS) 배너를 통해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다. ‘2030 의제’ SDGs지표도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구축 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통계포털 및 다양한 지표제공 홈페이지 등과 연계전략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11] 통계서비스 현황

### 3. 글로벌지표 작성전략

현재 글로벌지표는 224개의 잠정지표가 제시되었으며, 녹색지표는 161개가 IAEG-SDGs에 의해 동의되어 2016년 3월에 개최되는 통계위원회에서 채택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지표는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는 기존지표나 기존통계를 이용해 작성 가능한 지표이고, 2단계는 지표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통계가 요구되는 지표이며, 3단계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작성이 불가한 지표이다. 4단계는 현재 제시된 지표보다 모니터링에 적절한 지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계별로 별도의 지표생산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표 1-16〉 단계별 글로벌지표 구축전략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메타데이터 작성	IAEG-SDGs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작성			신규지표 제안
지표 평가	기존지표나 기존통계 이용 작성가능	새로운 통계필요	작성불가	
작성사항	통계표 작성	새로운 지표 작성방안 구축	작성불가 사유 정리	
	지표별 업무카드 (정의, 출처 등)	<input type="checkbox"/> 지표 세분화 연구(현황과약, 세분화방안 제시, 향후 전략) <input type="checkbox"/> IT를 이용한 모니터링의 신속화 방안 연구		
	지표개선방안 도출			

또한 글로벌지표는 지표세분화 및 200여 개 지표의 신속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IT와의 결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17〉 지표별 업무카드 예시

지 표 명	3.6.1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목표	건강한 삶의 보장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웰빙 증진						
세부목표	2030년까지,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 절반으로 감소						
구성항목	교통사고 사망자 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KOSIS		
	URL	<a href="http://taas.koroad.or.kr">http://taas.koroad.or.kr</a>					
	제공주기	매년					
	기타						
정의 및 산식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의미함						
지표의 의의	자동차는 통행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주는 주요한 수단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반면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현재 한국의 교통사고 피해와 교통안전 수준을 파악하여 교통문화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_국가주요지표						
용어해설	우리나라의 도로 사망률이나 보행자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거리 보행 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_출처 삶의 질 지표						
관련지표 / 유사지표							
세분화	성별	연령별	동부/읍면부	시도	소득수준별	기타	
비 고							

## 4. 국내지표 작성전략

SDGs이행을 위하여 향후 SDGs이행 관련 주관정책부처가 정해진 후, 우리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립되고, 세부목표 이행과 관련한 국내 정책들이 각 중앙정책부처를 중심으로 계획되면, 정책이행 여부 및 목표달성 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국가지표 개발전략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SDGs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국제협약 등은 이행을 지속될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에서 SDGs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향후 SDGs이행을 위한 국내전략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책분야와 비교할 때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자료조사 분석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목표별로 우리나라 현황에 대한 통계 작성이 필요하며, 글로벌지표 작성과정의 신속한 완수는 곧 국내지표 작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표 1-18]은 지표별로 지표이행을 위한 정책부처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며, 지표 생산과는 다른 의미이다(예: 영아 사망률의 정책부문은 보건복지부와 관련되었으나, 통계 생산은 통계청 소관). 분석편의를 위해 연구자가 지표이행을 위한 정책부처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여러 개의 부처가 관련된 경우 정책비중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으나,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므로 변동가능성이 있다. 지표수를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하는 정책과 관련된 지표가 많으며, 목표별로 보면 환경부가 많은 목표와 관련이 된다. 건강한 삶(목표3)에서 세부목표보다 많은 지표가 선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관련되어 선정된 지표수가 많다.

목표별로 주관부처를 살펴보면 목표1(빈곤퇴치), 목표3(건강한 삶)과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목표2(기아종식) 농림축산식품부, 목표4(교육) 교육부, 목표5(양성평등) 여성가족부, 목표6(물 및 위생), 목표12(지속가능소비 생산), 목표13(기후변화대처), 목표15(생물 다양성)과 관련하여서는 환경부가 주로 해당된다. 목표14(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서는 해양수산부, 목표7(에너지), 목표9(산업화 혁신추구)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와 관련이 있으며, 목표10(불평등감소), 목표16(평화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법무부가 많은 관련성을 보인다. 목표8(경제성장 및 고용) 고용노동부, 목표17(글로벌 파트너십)과 관련하여서는 외교부가 많은 관련성이 있으며, 자료모니터링 및 책무성과 관련한 세부목표에서는 통계청이 주도적으로 이행전략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표 1-18〉 지표와 정책이행 관련 부처

관련부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지표 수
보건복지부	5	4	22							2								33
환경부			1			8					3	4	2		8			26
산업통상 자원부							6	3	4			1					4	18
법무부										3						13		16
여성가족부					13													13
교육부				10								1	1					12
농림축산 식품부		11										1						12
외교부	1			1		1				2						1	6	12
국토교통부	1		1						2		7							11
해양수산부														10	1			11
기획재정부								1				2	1			2	4	10
고용노동부								7	1	1								9
산림청						1									6			7
미래창조 과학부									4								2	6
금융위원회								2		2								4
국민안전처	1										1		1					3
통계청																	3	3
행정자치부																3		3
해당사항 없음	1							1	1									3
국무조정실																	2	2
국민권익 위원회										1						1		2
문화체육 관광부								1				1						2
여성가족부					1													1
관세청										1								1
문화재청											1							1
방송통신 위원회																1		1
조달청												1						1
특허청												1						1
총합계	9	15	24	11	14	10	6	15	12	12	12	12	5	10	15	21	21	224

출처: 목표이행 정책부처 중심으로 작성(지표생산과 다른 개념), 부처 간 합의 이전이므로 변동가능  
음영은 목표별 주요 부처

## 5. IT를 이용한 모니터링의 신속화

‘2030 의제’ 77항에는 매년 국가통계에 기반한 국가보고서 제출이 합의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통계 및 지표가 생산되어야 하는데 200여 개의 지표를 매년 신속 정확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IT를 이용한 전산화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지표 작성을 위한 연구와 병행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지표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통계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e-나라지표 및 국가주요지표 등에서 구축된 지표생산 노하우를 SDGs지표에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제7절 SDGs이행을 위한 국가통계 대응전략

### 1. 개요

본 절에서 SDGs 세부목표17.18, 17.19 이행전략 구축을 중심으로 국가통계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30 의제’는 일부 세부목표의 경우 기초 자료가 부족한 해당국의 자료 수집 및 역량구축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를 요청하였으며, 발전의 측정 특히 명확한 산술적 목표가 없는 세부목표의 경우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관련 격차에 대해 논의할 것임(56항)을 담고 있다.

〈표 1-19〉 SDGs 세부목표17.18, 17.19 및 관련지표

17.18 2020년까지 고품질, 시의성 있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 이주상태,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

지표: 국가 단계에서 완전한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비중

17.19 2030년까지 GDP를 보완할 수 있는 측정치 개발,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개발 지원

지표: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되는 재정적 및 기타 지원

세부목표의 내용을 정책으로 좀 더 세분화해보면,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생산, 데이터세분화, GDP를 보완할 수 있는 측정치 개발, 개도국 통계역량강화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세부목표17.18의 지표는 국가단계에서 완전한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비중이며, 세부목표17.19에 해당되는 지표는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는 재정적 및 기타 지원과 ‘포괄적 부’ 지표이다. 다만 ‘포괄적 부’ 지표는 회원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현재 대안지표를 논의 중이다.

현재 선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국가통계 대응전략은 지표의 세분화 및 개도국 통계역량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지표의 세분화 및 개도국 통계역량 지원 및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산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데이터세분화는 글로벌지표 작성과도 밀접하게 관계되나 본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 2. 데이터세분화

SDGs는 세부목표(17.18)에서 소득, 성, 연령, 인종 등과 같은 주요 인구 하위집단에 대한 데이터세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현재 공식통계의 경우 소득, 성, 지리적 상태에 따라 작성되고, 인종, 민족, 이민, 이주상태, 장애상태 등에 대해서는 세분화 정도가 매우 낮다.

모든 지표에 대한 세분화를 위해서는 지표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식통계의 항목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시스템으로 각 기관은 독자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바, 공통된 주요 항목(성, 연령, 소득 등)에 대한 정의, 측정, 공표 방법 등에 있어서 조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SDGs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령세분화, 지역세분화 등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측정방법을 마련하여 각 주체들이 통계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선진 통계청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핵심항목 중심으로 데이터표준화(data harmonization)를 진행하고 있다(박영실, 양경진, 2015). 국가별로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해당 항목의 정의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방법 그리고 결과표 형식에 대해 표준화된 원칙을 제공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항목표준화는 자료 간 비교가능성을 증진하여 한 사회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항목표준화는 SDGs지표 세분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며, 궁극적으로 국가통계자료의 품질 향상의 기반이 될 것이다.

### 3. 개도국 통계역량지원

세부목표17.19의 지표를 고려할 때 개도국 통계역량지원을 위한 이행계획이 요구된다. ‘2030 의제’ 결과문서 및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는 개도국의 통계역량강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차 강조하고 있다. 개도국의 통계역량강화 노력에 동의하며(48항), 국가통계시스템 및 평가 프로그램 개선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지원확대를 필요로 한다(74-H). 개발도상국의 국가통계기관과 통계시스템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료의 고품질, 시의성, 신뢰성 및 세분화를 지원하며(76항), 이를 위한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 국가의 통계관련 당국과 부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국제협력을 제공(AAAA\_126항)하여야 함을 담고 있다.

현재 통계교육원과 국제협력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도국 통계역량강화사업은 참여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한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통계자료의 고품질, 시의성확보 및 세분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의 확대가 필요하다.

### 4. GDP를 보완하는 측정치 개발: SDGs 데이터실험실 설립

‘2030 의제’ 48항에서 GDP를 보완하는 광범위한 발전의 측정방법을 개발할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목표17.19는 2030년까지 GDP를 보완할 수 있는 측정치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GDP를 보완하는 측정치로,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지표는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 사회지표, e-나라지표, 국가주요지표, 지속가능지표 등이 있으며, 환경경제통합계정이 현재 개발 중이다.

‘2030 의제’ 74항은 기존 플랫폼과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고부담을 감소시켜 후속조치와 검토방안을 개선시킬 것을 담고 있다. 우리도 ‘2030 의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지표 등을 주제별지표로서 지속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료혁명 전문가 기구는 셀 수 있는 세계<sup>11)</sup>를 통해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자료를 탐색하여, SDGs지표 개발을 지원하는 SDGs 데이터실험실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적 잠정치표는 유연하며, 국가 주도적으로 지표생산을 이끌어 나가야 하므로, 향후 15년간 지속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지표개발을 위해 데이터실험실을 제안한다.

11) A World that Counts, 2014.



데이터실험실에서는 새로운 지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표작성에 신기술을 접목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개발된 지표세트는 지역모니터링과정에서 모범사례로 국제적으로도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 5.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 생산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 생산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통계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 절에서는 ‘2030 의제’와 관련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는 다음과 같이 통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26항~129항). ‘데이터를 강화하고 표준화할 것을 요청하며, 개선된 통계지표에 대한 제안을 환영한다. 지속가능발전의제 도입과 관련된 국제 통계의 타당성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와 보고를 요청한다. 서로 다른 출처의 정보들을 보다 쉽게 비교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운용이 가능한 데이터 표준을 만드는 노력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주체들이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통계체제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체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통계기준설정, 통계조정기능 및 품질관리 기능 강화가 요구될 것이며, 다양한 통계생산기관 간의 소통이 요구된다. 또한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공식통계화 방안 전략이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 가. 통계기준설정, 통계조정기능 및 품질관리기능 강화

글로벌지표는 공식통계를 통해 생산하여야 함을 명시함에 따라 지표생산에 이용되는 다양한 통계들의 공식통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통계작성기관이 다양하므로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설정 기능을 강화하며 설정된 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통계조정기능을 통해 다양한 통계가 국가승인하에서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계자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나. 통계생산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

분산형 통계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통계의 중복생산을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통계생산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통계를 점검하여 중복되는 통계 및 미생산 통계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도 통계생산기관 간의 네트워크강화 전략이 요구된다. 통계생산기관 간에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통계청에서는 통계생산기관들이 질 높은 통계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다.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식통계 작성

조사에 의한 사업체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데이터 정리를 위한 필수적인 기간이 요구되어 시의성 높은 통계작성이 어려우며, 항목을 세분화시킬 경우 표본단위가 증가되며, 이는 조사비용 증가 및 응답부담 증가를 의미하므로 세분화된 통계작성이 어렵다. 따라서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등은 필수적인 통계작성의 흐름으로 판단된다.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공식통계방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향후 지역 모니터링과정에서 모범사례 공유, 개도국 통계역량강화 등에 이에 대한 전파를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 6. 소결

본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제가 무엇인지를 통계적 관점에서 살펴본 후, 지속가능발전의제가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국가통계가 나아갈 바를 모색해 보았다. 국제통계사회는 ‘2030 의제’의 이행을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보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급속히 움직이고 있다. 이제 한국통계청도 이러한 국제통계사회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 조류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통계개발원에서는 향후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문헌>

- 곽성일(2015), 『다차원적 빈곤과 불평등』, 국제개발협력 2015년 No 1
- 곽재성·유승호·정정숙·김유진(2012), 『문화와 발전 : Post-MDGs 시대의 과제와 전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권율·박수경(2008), 『국제사회의 MDG 이행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양희(2014), 『젠더 측면에서 본 MDGs의 한계와 Post-MDGs 논의의 동향』, KOICA.
- 김은경·장은하·이미정·김영택·곽서희·조영숙(2014), 『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인(2010), 『UN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한국ODA 추진방안』,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지현(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SDGs 초안 분석』, KOICA.
- 김지현(2015), 『빈곤의 정의: 다면성과 측정의 한계』, 국제개발협력 2015년 No 1
- 김지현(2015),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2: Post-2015 의제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종합보고서 분석』, KOICA.
- 김지현 외(2015.7.),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 김찬유(2015), 『Post-2015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데이터혁명』, 국제개발협력 2015년 No 2
- 김태균(2013), 『개발협력 재원조달의 다중전환과 ODA의 중심성: Post-2015 시대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 박홍순(2014),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성과와 평가』, 한국외교협회.
- 배진수·강성호·한희정(2006), 『유엔 MDGs(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추진전략 및 기여 방안』, KOICA.
- 빈곤통계연보(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혁상·문경연(2013), 『개발재원과 Post-2015 아젠다: 주 의제 상정을 위한 비판적 고찰』, 한국 세계지역학회.
- 손혁상·이진영·여원영(2014), 『국제개발 규범형성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Post-2015 프레임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2014), 『누구의 책무성인가? : 인권과 Post-2015 개발의제』, 국가인권위원회.
- 이승주(2013), 『Post-2015 시대 개발협력 아젠다와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정책학회.
- 이주영(2015), 『Post-2015와 불평등 해소의 과제 : 인권적 접근』, KOICA.
- 임을출(2013),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 임소진(2012),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수립방향 및 전략 연구』, KOICA.
- 임소진(2012), 『한국 ODA의 부산글로벌파트너십 평가지표 이행방안』, KOICA.
- 임소진(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KOICA.
- 임소진(2013),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패널 보고서』, KOICA.

- 임소진(2013), 『Post-2015 글로벌 목표와 보건의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임소진(2013), 『모두를 위한 품위있는 삶 :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KOICA.
- 임원혁(2012), 『새천년개발목표의 교훈과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의 함의』, KDI.
- 외교통상부(2008),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행 추진 현황』, 외교통상부(부내 업무 참고자료).
- 정지선(2009), 『글로벌 경제위기와 MDG 이행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지원·정지선(2011), 『국제사회의개발재원논의동향과한국의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지원·박수경(2012), 『Rio+20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지원·권율·정지선·이주영·송지혜·유애라(2014),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지원·송지혜(2014), 『Post-2015 개발의제: 논의동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근식(2013), 『Post-2015 개발의제와 녹색 ODA』, KOICA.
- 홍은경(2013), 『Post-2015 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분야 ODA 지원방안』, KOICA.
- 환경부(2013),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연구』, 환경부.
- 황나미(2012), 『북한의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도 및 우선순위 보건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DA연구팀, 임소진 편저(2013), 『공여기관의 시각에서 본 분야별 Post-2015 개발목표 (Post-MDGs)』, KOICA.
- KDI-UNDP(2012), 『아시아적 시각에서 본 Post-2015 개발아젠다(Asian Perspective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aking Stock, Harnessing Knowledge, Achieving Results)』, 컨퍼런스 발표자료 모음집, 2012년 6월 13일.
- Data Revolution(2014), A World That Counts.
- United Nations(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2 August 2016.
- United Nations(2015), 'List of proposed preliminary indicators, February 2015.
-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2015), 'Technical report by the Bureau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o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an indicator framework for the goals and targets, March 2015.
- United Nations(2014),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vised working draft 25 July 2014.
- United Nations(2014),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vised working draft 25 November 2014.
- United Nations(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vised working draft 16 January 2015.
- United Nations(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 United Nations(2010), Keeping the promise: united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United Nations(2012),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 United Nations(2013), A Renewed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 United Nations(2013),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 United Nations(2013),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 United Nations(2013), Action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United Nations(2014),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rking draft 22 May 2014.
- United Nations(2014), Open Working Group propos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ited Nations(2014), Report of the Open Working Group of the General Assembly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ited Nations(2014), Report of the Friends of the Chair Group on broader measures of progress.
- United Nations(2014), Global Conference on a Transformative Agenda for Official Statistics.

## 〈부 록〉

### 1. SDGs지표리스트1)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1.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 인구 근절	1.1.1 국제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는 (도시/농촌)인구 비율 (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리적 위치별)
	1.2 각 국가별 빈곤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빈곤수준의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	1.2.1 국가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별 및 연령별)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1.3 국가별 사회보장제도 및 조치 이행; 2030년까지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범위 확장 이행	1.3.1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인구비율 (성별,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신생아, 산업재해피해자, 소외계층별)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1.4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특히 빈곤층)의 경제적 자원, 기본 서비스, 소유권, 토지 및 기타 형태의 부동산 상속, 천연자원, 신규기술 그리고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평등한 권리 보장	1.4.2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를 가지고 토지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가지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실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전체 성인의 비율(성별, 및 보유형태별)
		1.5.1 인구100,000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5 2030년까지, 빈곤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인구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의 노출 및 취약성 감소	1.5.2 국제 GDP와 비교해서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1.5.3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인 재난 위험 축소 전략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a 최빈국의 빈곤퇴치 이행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강화된 개발협력력을 포함, 다양한 재원 동원 보장	1.a.1 정부에 의해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되는 자원의 비율	
	1.a.2 정부의 총 지출 중 필수 서비스 (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에 소요 되는 지출 비율	
1.b 빈곤층과 성별을 고려하는 개발 전략을 근간으로, 빈곤퇴치활동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국가/지역/국제 수준의 정책 프레임 워크 수립	1.b.1 여성, 빈곤층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문으로 지출되는 정부의 반복적인 자본의 지출 비율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2. 기아종식, 식량 안보의 확보, 영양 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 농업강화	2.1 2030년까지 기아 종식 및 모든 인구의 충분하고, 안전하며, 구입 가능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대한 권리 보호(특히, 영아 및 빈곤층)	2.1.1 영양 부족 현황(POU) 2.1.2 식량 불안정 경험 척도(FIES)를 기준으로, 중간 혹은 극심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처해있는 인구 현황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부족을 종식시키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	2.2.1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연령대 비 신장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미만인 발육 부진 현황
		2.2.2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값 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또는 <-2 인 영양 불량 현황 (형태별: 저체중, 과체중)
	2.3 2030년까지 소규모 식품생산자 (여성, 토착민 등) 소득 2배 증가	2.3.1 노동단위당 생산규모 (농업, 축산업, 임업 기업크기별)
		2.3.2 소규모 식량 생산업자의 평균 소득 (성별, 토착상태별)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및 생산량을 증대하는 회복력 있는 농업 경영 이행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는 농지면적 비율
	2.5 2030년까지 종자, 재배식물, 가축 및 야생동식물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의 수
		2.5.2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에 있지 않은,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품종의 비율
	2.a 농촌의 기반시설, 농업연구, 기술 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 은행 투자 확대	2.a.1 정부 지출의 농업 편향 지수
		2.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 (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지원금을 합한 금액)
2.b 도하개발라운드에 따른 농산품 보조금 철폐를 포함하여 세계농업 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 시정	2.b.1 생산자 지원 추정치	
	2.b.2 농업 수출지원금	
2.c 지나친 식품가격 변동성 제어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상품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조치 채택	2.c.1 식품 가격의 이상치 지표(IPA)	
3.1 2030년까지 산모사망 비율을 10만 명당 70명으로 감소	3.1.1 산모 사망률(MMR)	
	3.1.2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한 출산의 비율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웰빙 증진	3.2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정상출산 1000명당 최대 12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5세 이하 유아의 사망률을 정상출산 1000명당 최대 25명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예방 가능한 신생아와 5세 이하 유아 사망 종식	3.2.1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3.2.2 신생아 사망률
	3.3 2030년까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열대병 및 주요 비전염성 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부담 감소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에이즈 감염자의 수(연령별, 성별 및 주요 인구별) 3.3.2 연간 1,000명당 TB(결핵) 발병 건수 3.3.3 연간 1,000명당 말라리아 발병 건수 3.3.4 해당 연도 내 인구 10만 명당 신규 B형 간염 감염자수 3.3.5 소외열대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인구 수
	3.4 2030년까지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1/3로 감소	3.4.1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3.4.2 자살로 인한 사망률
	3.5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마약 및 알코올 남용 포함)	3.5.1 약물남용 장애 치료 (의약, 심리 사회적, 재활 및 사후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3.5.2 국가별 상황에 따라, 주어진 회계연도 안에 (15세 이상의 인구가) 소비하는 1인당 순 알코올 리터 소비량으로 정의되는 알코올의 해로운 이용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절반으로 감소	3.6.1 도로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사망률
	3.7 2030년까지 성 및 생식적인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	3.7.1 현대화된 방식의 가족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임신 가능한 연령대(15~49세) 여성의 비율 3.7.2 동일 연령대 여성 1,000명당 청소년 (10-14세, 15-19세) 출산율
	3.8 재정리스크 보험,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보장 서비스 제공	3.8.1 일반 대중과 가장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임신, 모성, 신생아 및 아동 건강, 전염병, 전염되지 않는 질병 그리고 서비스 능력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추적개입을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기초로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의 보장으로 정의되는 필수 보건 서비스 범위
		3.8.2 인구 1,000명 당 건강 보험이나 공중 보건 시스템으로 보호를 받는 인구 수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양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3.9.1 집 그리고 집 주변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 하수처리 그리고 부족한 위생시설(안전하지 않은 WASH 서비스)로 인한 사망률
		3.9.3 의도하지 않은 중독에 의한 사망률
	3.a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3.a.1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연령대별 현황
	3.b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의 연구개발 지원과, 도하선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공중보건 보호 및 모든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연성 조항을 개발도상국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재확인함 - 에 따른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의 제공	3.b.1 적당한 가격으로 의약품 및 백신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총 순 투자
	3.c 최빈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보건인력 양성, 훈련 및 보건 분야 재원을 상당 수준 증가	3.c.1 보건근로자 밀도 및 분포
	3.d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조기 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3.d.1 국제 보건 규정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능력
	4.1 2030년까지 모든 어린이들의 무상의 고품질 초등·중등교육이수 보장	4.1.1 (a) 초등학교에서 3/2 이상을 마친 (b) 초등학교 졸업학년 (c) (i) 읽기 및 (ii) 수학에서 최소한의 숙련도를 보이는 중학교 졸업학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비율 (성별)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행복 측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5세 미만 아동의 비율 (성별)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p>4.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기회 증진</p>		4.2.2 (공식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되기 전 한 해 동안) 체계적 교육에 대한 참여율 (성별)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 및 남성들이 적절한 수준의 직업, 기술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성별)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유의미한 기술/직업능력 등의 능력을 갖춘 청소년 및 성인 인구수를 대폭 확대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가진 청소년/성인의 비율 (능력유형별)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차별 철폐; 취약계층의 아동, 장애인, 토착민 등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 보장	4.5.1 (여성/남성, 농촌/도시, 부의 하위/상위 20% 및 장애상태, 토착민, 분쟁피해자 등 기타: 데이터가 제공되는 기준에 의한) 동등성 지수
	4.6 2030년까지, 남녀포함 모든 청소년 및 성인의 상당부분이 문자해독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	4.6.1 해당 연령대 중 기능적인 능력 즉, (a) 독해 및 (b) 산술 능력에서 적어도 특정 수준의 숙련도를 갖춘 인구의 비율 (성별)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 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 (예: 지속가능한 개발 및 라이프 스타일, 인권, 성 평등, 평화 및 비폭력 문화 촉진 등)	4.7.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개발을 위한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 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4.a 아동, 장애인 및 성별을 배려 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비폭력적인 교육환경 구축	4.a.1 (a) 전기; (b) 교육 목적의 인터넷, (c) 교육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들을 위한 개선된 교육기반 시설 및 자원 (e) 기본적인 식수 시설; (f) 성별로 구분되는 기본적인 위생 시설 그리고 ;(g)(WASH 지표 정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손 씻기 시설에 접근 가능한 학교의 비율
	4.b 2020년까지, 직업훈련, 정보통신 기술, 기술적, 엔지니어링, 과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최빈국, 소도서 개발도상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되는 장학금 수를 대폭 확대	4.b.1 장학금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의 규모 (분야 및 연구 형태별);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4.c 2030년까지, 특히 최빈국,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교사 교육에 대한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대폭 확대	4.c.1 (a) 유치원교육; (b) 초등교육 (c) 중등교육; (d) 고등교육 교사 중에서 해당 국가에서 해당 수준의 수업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체계적인 교사연수(예: 교육 훈련)를 사전에 혹은 재직 중 받아 본 적이 있는 교사의 비율
5. 양성 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5.1 소녀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중지	5.1.1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5.2 인신매매, 성적 및 기타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공간에서의 소녀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5.2.1 성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 그룹별)
		5.2.2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율(연령그룹 및 사건 발생 장소별)
	5.3 아동 결혼 및 여성할례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위험한 관행 근절	5.3.1 15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18세 이전에 동거를 시작한 20-24세 연령의 여성들의 비율
		5.3.2 여성할례를 경험한 15-49세 연령의 소녀 및 여성의 비율 (연령별)
	5.4 공공서비스 및 사회보장정책 제공을 통하여 무보수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가정 내에서의 책임공유를 촉진	5.4.1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 (성별, 연령그룹 및 지역별)
	5.5 공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의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완전 참여 및 평등한 리더십 기회 보장	5.5.1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5.5.2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5.6 ICPD 및 북경 행동강령에 따라 성적 및 생식적인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임신 보전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5.6.2 15-49세 여성에게 성관계 및 임신 관련 보건 정보 및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수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5.a 경제적 자원, 소유권, 토지 및 기타 형태의 부동산, 상속, 천연 자원, 금융서비스 등의 평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하도록 개혁 실시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 (성별) (b)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 (보유기간별) 5.a.2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관습법을 포함한)법률적 기반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권한 증대를 위해 유용한 기술사용 강화 (특히 ICT)	5.b.1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 (성별)
	5.c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탄탄한 정책 및 시행 가능한 법규 채택	5.c.1 양성 평등과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공재원을 할당하고 추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비율
6. 모든 사람의 식수와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능력 확보	6.1 2030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제공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6.2 각별히 여성 및 소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충분하고 공평한 위생시설 보장; 노상배변 (open defecation) 근절	6.2.1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 화학 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폐수의 비율
		6.3.2 양질의 주변 수원을 갖고 있는 수역의 비율
	6.4 2030년까지 전 부문에서의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공급에 맞는 담수 회수(freshwater withdrawals) 및 공급으로 물 부족에 대응	6.4.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사용 효율성의 변화 비율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가능한 담수 자원의 부분으로서 담수의 취수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하여 통합된 물 자원 관리 이행	6.5.1 통합 수자원관리 (IWRM) 이행 정도 (0-100)
6.5.2 물 협력을 위해 운용협정을 맺고 있는 초국경 유역의 비율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범위의 변화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6.a 물·위생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역량배양 지원을 확대	6.a.1 정부 주도의 지출 계획의 일부인 물 및 위생 관련 공적개발원조 금액
	6.b 물·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 사회 참여 지원 및 강화	6.b.1 물·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7. 저렴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7.1 2030년까지 적절한 가격과 지속 가능하며 현대화된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비율
	7.2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상당하게 증가	7.2.1 에너지 소비의 최종단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
	7.3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글로벌 비율을 두 배 증가	7.3.1 1차 에너지와 GDP의 측면에서 측정된 에너지 집약도
	7.a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이행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7.a.1 약속한 1천 억불 투입에 대해 2020년부터 실제 동원되는 연도별 금액
	7.b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 현대화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에너지 기반 시설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7.b.1 지속가능한 개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과 기술에의 재정 지원을 위해 해외 직접투자 및 GDP 일부를 활용하는 에너지 효율성 투자
9. 회복력 높은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육성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국은 최소한 연간 7% GDP 성장률 유지	8.1.1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8.2 노동집약적 산업부문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 다각화, 기술업그레이드 및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8.3 생산적 활동, 일자리 창출, 기업가 활동, 창의성 및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형 정책 촉진; 중소기업 육성	8.3.1 비농업부문으로의 비공식 취업 비율 (성별)
	8.4 2030년까지 소비 및 생산에서의 국제적 자원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 선진국의 주도하에 10년 주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 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	8.4.1 자원의 범위, 1인당 자원의 범위, GDP당 자원의 범위 8.4.2 국내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내 자원 소비량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8.5 2030년까지 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을 포함, 모든 남녀의 완전 고용을 달성; 동등한 가치의 업무에 대해 동등한 보수 보장	8.5.1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 수당 (직업별, 연령별 및 장애인별)
		8.5.2 실업률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15-24세)의 비율
	8.7 강제노동 근절, 현대식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8.7.1 아동 노동을 하고 있는 5-17세 아동들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별)
	8.8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및 이주 노동자(특히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촉진	8.8.1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빈도 비율(성별 및 이주자 상태별)
		8.8.2 국제노동기구(ILO) 원문과 국가법 조항에 의거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을 준수하는 국가의 증가 (성별, 이주민 상태별)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8.9.1 전체 GDP와 성장률 중 관광 직접 GDP 비율
		8.9.2 전체 일자리 및 일자리 성장률 중 관광산업 관련 일자리의 수 (성별)
	8.10 보험업, 금융업 및 금융지원서비스의 접근가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내 금융 기관의 역량 강화	8.10.1 성인 100,000명 당 상업적 은행 지점들과 ATM의 개수
		8.10.2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거나 개인적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15세 이상) 성인 비율.
	8.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원조의 증가 (최빈국을 위한 무역관계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포함)	8.a.1. 무역거래 및 대금지급 원조
	8.b 2020년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8.b.1 국가예산 및 GDP 대비 사회 보장 및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총 지출액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9. 회복력 높은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육성	9.1 경제발전 및 인간의 웰빙을 위한 고품질,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한 탄력적 기반시설 구축	9.1.1 사계절 도로 반경 2km내 거주하는 지방 인구의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 (운송수단별)
	9.2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2030년까지 산업부문의 고용률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최빈국의 경우 2배로 증가)	9.2.1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3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및 금융서비스 접근가능성 강화(특히 개발도상국)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9.3.2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자원사용 효율 제고와 청정/환경친화 기술 및 산업공정의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과 낙후된 산업시설을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개선 및 개조하고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이를 이행함	9.4.1 부가가치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 2030년까지, 인구 백만 명 당 연구 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 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 개발 지출 9.5.2 거주자 백만 명당 (폴타임에 준하는) 연구원 수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국들,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9.a.1 기반시설에 지원되는 (공적개발 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자금을 합한) 공식적인 국제적 지원 총액
	9.b 산업 다각화, 상품가치를 부가시키는 산업환경 정책을 보장하여 개발도상국가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9.b.1 총 부가가치 중 중·고급 기술 산업 부가가치의 비율
	9.c ICT 접근성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최빈국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성(access) 달성을 위해 노력	9.c.1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기술별)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경감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의 소득성장률을 점진적으로 국가평균 보다 높게 달성 및 유지	10.1.1 하위 40% 인구 및 총 인구 중 가구지출 또는 1인당 소득의 성장률
	10.2 2030년까지 나이, 성, 장애, 인종, 종교, 기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 권한 확대 및 촉진	10.2.1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인별)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감소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장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더 나은 평등을 달성	10.4.1 임금 및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GDP 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10.5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 및 모니터링 개선 및 이행조치 강화	10.5.1 재정 건전성 지표
	10.6 글로벌 국제경제 및 금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개발도상국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강화	10.6.1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비율
	10.7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토록 하고 잘 관리된 이민정책 수립 및 이행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간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비율
		10.7.2 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10.a WTO협약에 따른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특별대우 규정 이행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국/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선 비율
	10.b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군서도서개발국) ODA, 재원 지원, 직접투자 권장	10.b.1 개발을 위한 자원투입 총액 (예: 공적개발원조,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투입)
10.c 2030년까지 이민자송금 수수료 3% 이하로 감소 및 5%를 초과하는 송금 장벽 제거	10.c.1 송금된 금액 대비 송금 비용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 및 저렴한 주택 및 기본서비스 제공 그리고 빈민가 개선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불충분한 시설을 가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의 비율
	11.2 2030년까지 모두에게(특히, 취약 계층,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안전 및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교통시스템 제공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연령별, 성별 및 장애인별)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1.3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통합 및 지속가능한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11.3.1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 소비 비율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 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비율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11.4.1 세계문화유산에 포함하는 국가 문화·자연유산의 보전,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국가(또는 지방)예산의 비율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5.1 인구 100,000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1.6 대기의 질과 지사체 등의 폐기물 특별 관리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 (인구 1인당)을 감소	11.6.1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고형 폐기물 중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최종처리단계를 거치는 도시 고형 폐기물 비율 11.6.2 도시 미세먼지(PM2.5초미세 먼지와 PM10미세먼지)의 연평균 수준 (인구수에 따른 가중)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시가화 지역이 차지 하는 평균비율 (연령, 성 및 장애 인별)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상태별, 발생 장소별)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 하여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 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를 지원	11.a.1 인구 추계와 자원 수요를 통합 하는 도시 지역 발전 계획을 이행 하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도시 크기별)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위한 통합 정책 및 계획을 채택, 시행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대폭 확대 하고, 2015-2030년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재난 위기관리를 구축하고 시행함	11.b.1 센다이 재난위험감축체계 (2015-2030)에 따라 지역적인 재난 위험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 하는 지방 정부의 비율 11.b.2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을 갖춘 국가의 수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11.c 최빈국이 지역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재원 및 기술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11.c.1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자원 효율적인 건물을 짓고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재정 지원 비율
12. 지속 가능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2.1 선진국 주도하에, 개발도상국들의 역량과 발전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SCP) 국가 실행계획이나 SCP를 주류화하는 계획을 국가정책 우선순위 혹은 세부목표로 갖고 있는 국가들의 수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12.2.1 자원의 범위, 1인당 자원의 범위, GDP당 자원의 범위 12.2.2 국내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내 자원 소비량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1/2로 감소하고 식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량 감소	12.3.1 국제 식량 손실 지수(GFLI)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수명 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크게 감소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환경 다자 협약에 참여해, 각 규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전달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수 12.4.2 1인당 발생하는 유해폐기물, 유형별로 처리되는 유해 폐기물의 비율
	12.5 2030년까지 방지, 감축, 재생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감소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재활용되는 다수의 물질
	12.6 기업들이(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 보고체계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반영토록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이행하도록 권고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	12.7.1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들의 수
	12.8 2030년까지 자연과 조화롭게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개발 및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의식 및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보장	12.8.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기후 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교육이 (a) 국가 교육 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12.a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12.a.1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지원 되는 금액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관광업의 지속 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도구 개발 및 이행	12.b.1 합의된 모니터링과 평가수단을 가진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나 정책 그리고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
	12.c 조세구조 조정 및 유해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시장왜곡 요인 제거를 포함하여 에너지낭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이행 (이때,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취약계층을 보호를 통해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함)	12.c.1 GDP 단위 (생산과 소비)당,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13.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	13.1 기후관련 위험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탄력성 강화	13.1.1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13.1.2 인구 100,000명 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3.2 국가정책, 전략 및 계획에 기후 변화 조치 통합	13.2.1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회복력을 기르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통합된 정책/전략/계획의 수립과 운용을 홍보하는 국가의 수 (국가 적응계획, 국가적으로 결정된 분담, 국가 차원의 홍보, 격년별로 갱신되는 보고서 등)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13.3.1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를 1차, 2차, 3차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국가들의 수	
	13.3.2 적응, 완화, 그리고 기술 이전 및 개발 이행을 위한 기관, 체계,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 강화를 홍보한 국가의 수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13.a 개발도상 국가들의 기후변화 완화 활동의 이행 및 녹색기후펀드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 유엔기후변화 협약 상의 선진국들의 공약인 연간 \$1000억 동원 즉각 이행	13.a.1 약속된 1천 억불 투입에 대해 2020년부터 실제 동원되는 연도별 금액
	13.b 최빈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 메카니즘 촉진(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및 소외집단 포함)	13.b.1 여성, 청소년, 및 지역 및 소외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을 위한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최빈 개도국과 군소 도서개도국의 수
14.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용	14.1 2025년까지 해양 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14.1.1 해안 부영영화 및 유동 플라스틱 잔해밀도 지수
	14.2 2020년까지 회복력 및 복원활동을 강화하여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 조치 실행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율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포함하여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그 영향에 대응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 산도 (pH)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업 규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 파괴적인 어업 방법 금지; 최단 시간에 어획량을 복원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계획 이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 이내의 어족자원의 비율
	14.5 2020년까지 가용한 과학적 정보 및 국가법·국제법과 일관되게 최소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호	14.5.1 해양지역 대비 보호구역의 범위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 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14.6.1 불법적, 보고되지 않은,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와 싸우기 위한 국제적인 수단을 이행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국가별 진전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통하여 최빈국 및 군서도서 개발국의 경제적인 이익 증가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 가능한 어업 비율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14.a 해양건강 개선 및 해양 다양성 강화를 통해 개발도상국가, 특히 군소도서 개발국과 최빈국들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연구역량 증대 및 과학지식, 선진해양기술 이전 (정부간해양학위원회의 해양기술 이전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고려)	14.a.1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되는 전체 연구 예산의 비율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 자원 및 시장 접근성 제공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 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해 주고 보호할 수 있는 법/규정/정책/제도적인 기반을 실행 단계에서의 국가별 진전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상기된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기반을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유엔해양법 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법을 이행하는 법적,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들 및 대양 관련 수단들을 비준, 수용하고 이행하는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15. 육상 생태계에 대한 보호,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사용, 산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단 및 복원,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15.1.1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1.2 육상 및 담수 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 지역의 비율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시키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 식림을 대폭 확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서의 진전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 중립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15.3.1 총 대지면적 중 등급 저하된 대지 비율
	15.4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생태계 보호	15.4.1 산 생물 다양성을 위한 중요 장소 보호구역 범위 15.4.2 산 녹색 보호 지수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방지, 토지 황폐화 중단 및 복원,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0년까지 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할 것	15.5.1 레드리스트 지수
	15.6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의 공평한 분배 보장 및 유전자원 사용을 위한 적절한 접근 촉진	15.6.1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인 기반을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밀렵 및 보호대상 동식물 밀매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 촉구; 야생동식물을 이용한 불법적 상품의 수요와 공급 모두에 대응	15.7.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15.8 2020년까지 외래종의 생태계 교란에 따른 영향을 감소하는 조치 도입 및 실행; 우선순위 높은 외래종 통제 및 퇴치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퇴치 전략에 반영	15.9.1 2011-2020 생물 다양성 전략 계획의 Aichi 생물 다양성 목표2에 따라 수립된 국가 목표의 진전도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 동원	15.a.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b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보호, 재조림 관련, 개발도상국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동원	15.b.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c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의 추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제고를 포함하여 멸종위기종의 밀렵 및 밀매 활동 근절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 강화	15.c.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관련 사망률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16.1.1 인구 100,000 명당 의도된 살인 범죄의 피해자 수 (연령별 및 성별)
		16.1.2 인구 100,000 명당 분쟁관련 사망 (연령별, 성별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 동안 육체적, 심리적, 성적폭력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16.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추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6.2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고문, 학대, 착취, 매매 근절	16.1.4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홀로 안전하게 걷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의 육체적인 체벌이나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16.2.2 인구 100,000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중 파악되거나 파악되지 않은 인구 수; (성별, 연령별, 착취 형태별)
	16.3 국제 및 국가수준에서 법의 지배 촉진 및 동등한 법의 접근성 보장	16.2.3 18세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8-24세 여성과 남성의 비율
		16.3.1 지난 12개월간 폭력 피해자 중 피해를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신고한 인구 비율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흐름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은닉 재산 회수 및 환수; 조직범죄 대응	16.3.2 전체 교도소 수용자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수감자의 비율
		16.4.1 국내 및 국외 불법 반입 자금의 총 가치 (현재 US달러 기준)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수수 근절	16.4.2 국제 규범 및 법적절차에 따라 기록 및 추적되고 압수된 휴대용 소형 무기의 비율
		16.5.1 지난 12개월 간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16.6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5.2 지난 12개월간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 받았던 기업인의 비율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의 비율 (부문별 또는 예산코드 및 이와 유사한 기준별)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16.7 포괄적이고, 반응적이고,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16.7.1 국가 전체적 분포와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보직 분포비율 (연령, 성별, 장애인 및 인구집단별) 16.7.2 의사결정이 통합적이고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 및 인구 집단별)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하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6.8.1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	16.9.1 출생시 시 행정 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들의 비율 (연령별)
	16.10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정보에 대한 공공 접근성 및 기본적 자유 보호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무역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해, 납치, 강요된 실종, 임의구금 및 고문으로 확인된 사건 수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포함, 국가제도 강화 (특히, 개발도상국)	16.a.1 파리규정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관의 존재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 및 정책 이행 및 강화	16.b.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근거해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연령별, 성별)
	17.1 조세 및 기타 수익 징수 국내 역량 개선을 위해 국내재원 동원 강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지원 포함)	17.1.1 총 GDP 대비 정부 세수 총액 (출처별) 17.1.2 국내세금에 의해 자금이 지원 되는 국내 예산의 비율
	17.2 GNI의 0.7%를 ODA로 제공하고 GNI의 0.15-0.20%를 최빈국에 제공하는 목표를 가진 다수의 선진국의 공약을 포함하여, 선진국의 완전한 ODA 공약 이행; ODA 제공 국가는 적어도 GNI의 0.20%를 최빈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고려할 것을 권장.	17.2.1 OECD/개발 원조 위원회(DAC)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1) ODA 순액의 비율 2) ODA 총액의 비율 3) LDC(최빈국)에 대한 ODA 비율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17. 이행 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17.3 개발도상국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동원	17.3.1 총 국내예산 중 해외 직접 투자, 공적개발 원조 및 남남 협력의 비율 17.3.2 총 GDP 중 송금액(미국달러 기준)의 비율
	17.4 부채조달, 채무구제, 부채재조정을 목표로 하는 협조정책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장기 부채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지원, 최빈채무국의 외부 부채 문제에 대응하여 채무곤경 감소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채무 상황
	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 촉진 체제 도입 및 이행	17.5.1 최빈 개도국을 위한 투자증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7.6 과학, 기술, 혁신으로의 접근에 대한 북-남, 남-남, 지역 및 국제 삼각협력 강화; 기존 메커니즘, 특히 UN차원의 메커니즘, 간의 조정과 세계적인 기술촉진 메커니즘 등을 통해 상호합의된 사항에 대한 지식공유강화	17.6.1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과 프로그램의 수 (협력 형태별) 17.6.2 거주자 100명당 고정 인터넷 광대역 가입률 (속도별)
	17.7 상호합의에 의한 양해적, 우호적 조건을 포함, 개발도상국에 우대 조건으로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 이전, 보급, 확산 촉진	17.7.1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배포 및 확산을 촉진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지원액 중 총 승인금액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 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커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위주의 핵심 기술 사용을 강화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17.9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포함한 국제협력 강화	17.9.1 개발도상국으로의 (남북, 남남, 그리고 삼각 협력을 포함하는) 재정 및 기술 지원의 달러 가치
	17.10 도하개발의제 상의 협상결과를 포함하여 WTO하에서의 비차별적, 평등, 공개적, 규칙기반적인 다자 무역제도 촉진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치
	17.11 최빈국의 글로벌 수출 비중이 2020년까지 2배로 증가한다는 전망 하에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	17.11.1 전세계 수출 가운데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수출비중

목표(17개)	세부목표 (169개)	잠정치표 리스트 (241)
	17.12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규정 투명성 및 명료성을 포함하여 최빈국의 무관세 및 수량 규제 없는 시장접근에 대한 WTO 결정을 시의성 있게 이행	17.12.1 개발도상국, 후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거시경제 안전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대쉬보드
	17.14 지속가능발전관련 정책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증진하기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한 국가의 수
	17.15 각 국가의 정책 공간(policy space) 및 리더십을 존중하고 빈곤 퇴치,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및 이행	17.15.1 개발협력 제공자가 국가소유의 결과 프레임워크 및 계획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17.16 지식, 기술, 재원 공유를 통하여 각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속가능개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중이해당사자 개발효용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의 진전을 보고하는 국가의 수
	17.17 경험축적 및 전략공유를 통하여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 사회 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17.17.1 공공-민간 및 시민단체 파트너십을 위해 약속된 US달러 금액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이주상태, 장애 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	17.18.1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완전 세분화된 국가적 수준에서 작성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비율
17.18.2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7.18.3 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이행 중에 있는 국가 통계 계획을 가진 국가의 수 (재정지원 출처별)		
	17.19 2030년까지 GDP 보안을 위한 지속가능개발 성과 측정치 개발에 대한 기존의 노력을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개발을 지원	17.19.1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7.19.2 지난 10년 동안 a)최소한 한 번의 인구주택조사를 진행했고, b)100 퍼센트의 출생등록과 80퍼센트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1) 2016.3. 유엔통계위원회 상정치표 기준



## 2. 세부목표와 관련 협약

목표	세부목표(Target)	관련 회의, 협약	주관기관	기간
2	2.b 도하개발라운드에 따른 농산품 보조금 철폐를 포함하여 세계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 시정	도하개발 어젠다	UN	2001.~진행 중
3	3.6 2030년까지,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고, 중간에, 2020년까지,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국제 사망과 부상을 안정화 시키고 감소	도로안전 10년 계획 (Decade of Action for Road Safety)	UNFIA	2011. 착수 (목표기간: 2011-2020)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	WHO	2003. 채택~ 2005. 발효
	3.b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주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료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개발도상국의 공공보건 보장의 유연성 관련 지식 재산권 무역협정의 규정을 전폭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확인하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에 따라 저렴한 가격의 의료와 백신 접근성 제공, 특히 모든 국민에 의료제공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	WTO	2001. 채택
5	5.6 ICPD 및 북경 행동강령에 따라 성적 및 생식적인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세계인구개발 회의(1994, 카이로)	UNFPA	1994. 개최 (목표기간: 1995~2015)
		베이징행동강령(베이징여성대회의, 1995)	UN WOMEN	1995. 개최
6	6.6 2030년까지, 산, 삼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가 온전히 보호와 복원됨	람사르 협약	국제연합 람사르 사무국	1971. 채택
8	8.4 2030년까지 소비 및 생산에서의 글로벌자원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 선진국의 주도하에 10년 주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 성장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분리	2002 지속가능 발전세계정상 회의(WSSD) →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10개년 계획 (10YFP) 프로세스 시작 (2003)	UNCSD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 2002)
		→ Rio+20회의에서 채택 (2012)	UN	Rio+20회의 (2012)

목표	세부목표(Target)	관련 회의, 협약	주관기관	기간
	8.7 강제노동 근절,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시행.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유엔아동권리 협약	UN	1989. 채택 1990. 발효
	8.a 최빈국을 위한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지원	최빈국 무역 관련 기술협력 통합구조(EIF)	WTO OECD	2007. 시작
	8.b 2020년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세계 일자리 협약(Global Jobs Pact)	ILO	2009. 98차 총회에서 채택 2015.06. 104차 총회
10	10.a WTO 협약에 따라 개발도상국가(특히, 최빈국) 특별대우 규정 이행	WTO 협약	WTO	1994. 시작~ 진행 중
11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재난들에 대한 회복력을 향한 통합 정책 및 계획을 채택, 시행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대폭 확대 그리고 2015-2030년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모든 수준에서 통합재난위기관리 개발 및 시행	유엔세계재난 위험경감총회	UNISDR	2014. 센다이 프레임워크 개최 (목표기간 : 2015~2030)
12	12.1 선진국 주도하에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10개년 계획 (10YFP)	UN	2003. 시작
13	13.a 개발도상국가들의 기후변화 완화 활동의 이행 및 녹색기후펀드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선진국들의 공약인 연간 1000억 달러 동원 즉각 이행	유엔기후변화 협약 (UNFCCC)	UN	1992. 체결 1995. 교토 의정서 2015. 21차 COP 예정 (11.30~12.11)
14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WTO 어업 보조금 협상	WTO	2002. 시작
	14.c 대양 및 대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존의 지역 및 국제체제 (해당할 경우) 등	유엔해양법 협약	UN	1982. 채택 1994. 발효



목표	세부목표(Target)	관련 회의, 협약	주관기관	기간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바와 같이 국제법의 온전한 이행을 보장			
15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삼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 시행을 촉진시키고,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삼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 식림을 대폭 확대	유엔산림포럼	UNFF 사무국	'01. 1회 개최 2015. 제11차 COP 개최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 중립 세계 달성을 위한 노력	유엔사막화 방지협약	UNCCD 사무국	1994. 채택 1996. 발효 2011. 제10차 COP
	15.4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생태계 보호	유엔생물다양성 협약	UNEP	1992. 채택 1993. 발효 2014. 제12차 COP(평창)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 및 단편화를 줄이기 위해 시급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2020년까지 위기 종의 멸종 방지 및 보호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2030년까지 할 것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퇴치 전략에 반영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 동원			
	15.b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보호, 재조림 관련 개발 도상국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동원	유엔산림포럼	UNFF 사무국	'01. 1회 개최 2015. 11차 COP 개최
17	17.2 GNI 중 0.7%를 ODA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고, 이에 대해, 이스탄불 실천계획에 따라 적어도 GNI의 0.15-0.20%를 최빈국에 제공하는 등, 선진국의 완전한 ODA 공약 이행	제4차 유엔최 빈국회의 <Istanbul 행동 계획(IPoA)>	UN	1981. 1회 2011. 최빈국을 위한 지원 가이드라인 명시
	17.10 도하개발의제상의 협상결과를 포함하여 WTO 하에서의 비차별적, 평등, 공개적, 규칙기반적인 다자무역제도 촉진	도하개발어젠 다(DDA) 협상	UN	2001.~진행 중

## 3. UN 통계처 325개 지표 설문응답 국가현황\_소득별

Low and Lower-Middle Income	Upper-Middle Income	High Income
방글라데시(Bangladesh)	알바니아(Albani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베냉(Benin)	벨라루스(Belarus)	오스트리아(Austria)
부룬디(Burundi)	보츠와나(Botswana)	바하마(Bahamas)
캄보디아(Cambodia)	브라질(Brazil)	바베이도스(Barbados)
카메룬(Cameroon)	불가리아(Bulgaria)	캐나다(Canad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콜롬비아(Colombia)	크로아티아(Croatia)
이집트(Egypt)	코스타리카(Costa Rica)	체코(Czech Republic)
가나(Ghana)	쿠바(Cuba)	핀란드(Finland)
인도(India)	도미니카(Dominica)	프랑스(France)
인도네시아(Indonesia)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독일(Germany)
케냐(Kenya)	에콰도르(Ecuador)	그리스(Greece)
라이베리아(Liberia)	가봉(Gabon)	아일랜드(Ireland)
말리(Mali)	그레나다(Grenada)	이스라엘(Israel)
몽골(Mongolia)	헝가리(Hungary)	이탈리아(Italy)
필리핀(Philippines)	이라크(Iraq)	일본(Japan)
아르메니아(Republic of Armenia)	자메이카(Jamaica)	한국(Korea)
카보베르데 (Republic of Cabo Verde)	카자흐스탄(Kazakhstan)	쿠웨이트(Kuwait)
몰도바(Republic of Moldova)	몰디브(Maldives)	라트비아(Latvia)
남수단(Republic of South Sudan)	머리셔스(Mauritius)	리투아니아(Lithuania)
르완다(Rwanda)	멕시코(Mexico)	네덜란드(Netherlands)
스리랑카(Sri Lanka)	몬테네그로(Montenegro)	뉴질랜드(New Zealand)
팔레스타인(State of Palestine)	파나마(Panama)	노르웨이(Norway)
탄자니아(Tanzania)	페루(Peru)	오만(Oman)
우크라이나(Ukraine)	루마니아(Romania)	폴란드(Poland)
	세르비아(Serbia)	포르투갈(Portugal)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카타르(Qatar)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러시아(Russian Federation)
	수리남(Suriname)	싱가포르(Singapore)
	태국(Thailand)	슬로바키아공화국 (Slovak Republic)
	터키(Turkey)	슬로베니아(Slovenia)
	투발루(Tuvalu)	스페인(Spain)
		스위스(Switzerland)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 and Tobago)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영국(United Kingdom)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24 개국	31 개국	36 개국
총 91 개국		

출처: world bank 소득수준별 국가분류 기준으로 설문응답 국가 재분류함



## 4. UN 통계처 325개 지표 설문응답 국가현황\_대륙별 분류

Europe	Latin America & North America	Asia & Middle East	Africa
알바니아(Albania) 오스트리아(Austria) 벨라루스(Belarus) 불가리아(Bulgaria) 크로아티아(Croatia) 체코(Czech Republic)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그리스(Greece) 헝가리(Hungary) 아일랜드(Ireland) 이탈리아(Italy)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 몬테네그로(Montenegro) 네덜란드(Netherlands) 노르웨이(Norway) 폴란드(Poland) 포르투갈(Portugal) 몰도바 (Republic of Moldova) 루마니아(Romania)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세르비아(Serbia) 슬로바키아 공화국 (Slovak Republic) 슬로베니아(Slovenia) 스페인(Spain) 스위스(Switzerland) 우크라이나(Ukraine) 영국(United Kingdom)	바하마(Bahamas) 바베이도스(Barbados) 브라질(Brazil) 콜롬비아(Colombia) 코스타리카(Costa Rica) 쿠바(Cuba) 도미니카(Dominica) 도미니카 공화국 (Dominican Republic) 에콰도르(Ecuador) 그레나다(Grenada) 자메이카(Jamaica) 멕시코(Mexico) 파나마(Panama) 페루(Peru)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수리남(Suriname)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 and Tobago) 캐나다(Canada)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방글라데시(Bangladesh) 캄보디아(Cambodia) 인도(India) 인도네시아(Indonesia) 일본(Japan) 카자흐스탄(Kazakhstan) 한국(Korea) 몰디브(Maldives) 몽골(Mongolia) 필리핀(Philippines) 싱가포르(Singapore) 스리랑카(Sri Lanka) 태국(Thailand) 이라크(Iraq) 이스라엘(Israel) 쿠웨이트(Kuwait) 오만(Oman) 카타르(Qatar) 아르메니아 (Republic of Armenia) 팔레스타인 (State of Palestine) 터키(Turkey)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베냉(Benin) 보츠와나(Botswana) 부룬디(Burundi) 카메룬(Cameroon)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이집트(Egypt) 가봉(Gabon) 가나(Ghana) 케냐(Kenya) 라이베리아(Liberia) 말리(Mali) 머리셔스(Mauritius) 카보베르데(Republic of Cabo Verde) 남수단(Republic of South Sudan) 르완다(Rwanda)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탄자니아(Tanzania)
			17 개국
			Oceani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뉴질랜드(New Zealand) 투발루(Tuvalu)
30 개국	19 개국	22 개국	3 개국

## 5. 세부목표별 지표선정에 참여한 국제기구

목표	참여기구	참여기구 수
1	World Bank, ILO, OECD, UNDP, UNICEF, FAO, UNSD(EDGE), UNISDR, INFORMEA	9
2	FAO, UNICEF, WHO, World Bank, WTO, OECD	6
3	WHO, UNICEF, UNFPA, World Bank, UNDESA, UN Population Division, UNAIDS, UNODC, UN Road Safety Collaboration, OECD	10
4	UNESCO-UIS, ITU, World Bank, OECD, IEA, UNICEF, OECD-DAC	7
5	OHCHR, UN-Women, UNICEF, UNSD, UNFPA, WHO, UCLG, IPU, FAO, ITU	10
6	WHO, UNICEF, UNEP, UN-Water, UN-HABITAT, FAO, CBD, OECD-DAC	8
7	World Bank, UNFCCC, UNSD	3
8	World Bank, ILO, UNEP, UNIDO, OECD, UN-WTO, IMF, WTO, OECD	8
9	World Bank, UNIDO, UNESCO-UIS, ITU	4
10	World Bank, UNDESA, OECD, EU Fundamental Rights Agency, IMF, ILO,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Ministries of Labour, GMG, UNODC, UNCTAD	11
11	UN-HABITAT, UNESCO-UIS, UNISDR, UNEP, WHO, UNFPA, DESA, World Bank, ICLEI, Rockefeller Foundation, 100 Resilient Cities, 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nstruction,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C40 Climate Leadership Group	14
12	UNEP, OECD, FAO, Secretariat of the Basel, Rotterdam and Stockholm Conventions, Interim Secretariat of the Minamata Convention, SAICM Secretariat, UNSD, GRI, Union for Ethical Biotrader, WIPO, UN-WTO, IEA	13
13	UNISDR, Secretariats for IMEAs, UNICEF, UNFCCC, OECD	5
14	FAO, UNEP-WCMC, UNSD, UNEP, ILO	5
15	FAO, UNCCD, UNSD, UNEP-WCMC, IUCN, CBD, UNODC, OECD	8
16	UNODC, WHO, IISS Armed Conflict Database, the UCDP Battle-Related Deaths Dataset, PRIO Battle-Deaths Data, UNICEF, IMF, GFI, World Bank-PEFA Secretariat, UNCAC Secretariat, UN Women, OHCHR, IPU, UNFPA, UNSD, DESA, UNESCO, ILO, ITUC, IFJ, EU Fundamental Rights Agency, Eurobarometer, Afrobarometer	23
17	IMF, OECD, World Bank, UNCTAD, WIPO, WTO, ITC, ITU, UNSD, OHCHR, UNEP, UNDP, UNFPA, DESA	14

총 68개 기관

출처: IAEG-SDGs 204개 지표 리스트를 기준으로 작성



## 6. 지표선정에 참여한 국제기구 설명

참여기구 약자	참여기구 설명
WB	세계은행(World Bank)
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DP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ICEF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FAO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UNSD (EDGE)	유엔통계처 The Evidence and Data for Gender Equality(EDGE)
UNISDR	유엔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 전략기구(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INFORMEA	United Nations Information Portal o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WHO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T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UNFPA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
UNDESA	유엔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AIDS	UN산하 에이즈 전담기구(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ODC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RSC	United Nations Road Safety Collaboration
UNESCO-UIS	유네스코 통계 연구회(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ITU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EA	OECD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OECD-DAC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HCHR	유엔인권고등판무관(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Women	유엔여성기구
UNSD	유엔통계처(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UCLG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IPU	국제의원연맹(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
UNEP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Water	물 관련 이슈를 다루는 UN 기관 간 협조 기구
UN-HABITAT	유엔인간거주정착센터(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CBD	생물 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참여기구 약자	참여기구 설명
UN-WTO	세계관광기구(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IMF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UNIDO	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EU FRA	EU 기본권 기구(EU Agency of Fundamental Rights )
GMG	Global Migration Group
UNCTAD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ICLEI	지방정부연합(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GFDRR	재해저감복구국제기구(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nstruction)
ID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SAICM Secretariat	UN화학물질관리전략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입안 연구센터(Global Reporting Initiative)
UEBT	국제바이오무역조합(Union for Ethical BioTrade)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UNEP-WCMC	유엔환경계획 세계 환경 모니터링센터(UNEP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UNCCD	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ISS Armed Conflict Database	국제 전략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무력분쟁 데이터베이스
the UCDP Battle-Related Deaths Dataset	웁살라갈등자료프로그램(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분쟁 관련 사망 데이터셋
PRIO Battle-Deaths Data	오슬로 국제 평화 연구소(The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분쟁 관련 사망 데이터
UNCAC Secretariat	유엔반부패협약(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사무국
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TUC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FJ	국제 기자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Eurobarometer	유로바로미터: 유럽연합위원회 산하 여론설문조사기관
Afrobarometer	아프로바로미터: 아프리카의 대표적 여론조사 단체
ITC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7. 지표관련 참고 인터넷주소2)

지표	참고 사이트
1.4.3	<a href="http://econ.worldbank.org">http://econ.worldbank.org</a>
2.1.1	<a href="http://www.fao.org/economic/ess/ess-fs/ess-fadata/it/#.VM89cGjF-VM">http://www.fao.org/economic/ess/ess-fs/ess-fadata/it/#.VM89cGjF-VM</a>
2.1.1	<a href="http://faostat3.fao.org/download/D/*E">http://faostat3.fao.org/download/D/*E</a>
2.1.2	<a href="http://www.fao.org/economic/ess/ess-fs/voices/fiessscale/metadata/en/">http://www.fao.org/economic/ess/ess-fs/voices/fiessscale/metadata/en/</a>
2.2.1	<a href="http://apps.who.int/gho/indicatorregistry/App_Main/view_indicator.aspx?iid=72">http://apps.who.int/gho/indicatorregistry/App_Main/view_indicator.aspx?iid=72</a>
2.2.2	<a href="http://apps.who.int/gho/indicatorregistry/App_Main/view_indicator.aspx?iid=74">http://apps.who.int/gho/indicatorregistry/App_Main/view_indicator.aspx?iid=74</a>
2.4.2	<a href="http://faostat3.fao.org/modules/faostat-download-js/PDF/EN/GT.pdf">http://faostat3.fao.org/modules/faostat-download-js/PDF/EN/GT.pdf</a>
2.5.1	<a href="http://www.bipindicators.net/cropcollections">http://www.bipindicators.net/cropcollections</a>
2.5.1	<a href="http://www.fao.org/3/a-mm181e.pdf">http://www.fao.org/3/a-mm181e.pdf</a>
2.5.1	<a href="http://www.pgrfa.org/WIEWS/">http://www.pgrfa.org/WIEWS/</a>
2.5.2	<a href="http://dad.fao.org/">http://dad.fao.org/</a>
2.5.2	<a href="http://www.fao.org/docrep/meeting/026/me514e.pdf">http://www.fao.org/docrep/meeting/026/me514e.pdf</a>
2.5.2	<a href="http://www.fao.org/docrep/meeting/028/mg538e.pdf">http://www.fao.org/docrep/meeting/028/mg538e.pdf</a>
2.5.2	<a href="http://www.fao.org/3/a-mm278e.pdf">http://www.fao.org/3/a-mm278e.pdf</a>
2.5.2	<a href="http://www.bipindicators.net/domesticatedanimals">http://www.bipindicators.net/domesticatedanimals</a>
2.5.2	<a href="http://www.cbd.int/gbo/gbo4/publication/gbo4-en-lr.pdf">http://www.cbd.int/gbo/gbo4/publication/gbo4-en-lr.pdf</a>
2.5.2	<a href="http://www.fao.org/3/a-mm278e.pdf">http://www.fao.org/3/a-mm278e.pdf</a>
2.5.2	<a href="http://www.fao.org/docrep/010/a1250e/a1250e00.htm">http://www.fao.org/docrep/010/a1250e/a1250e00.htm</a>
2.5.2	<a href="http://dad.fao.org/">http://dad.fao.org/</a>
2.5.2	<a href="http://www.cbd.int/gbo/gbo4/publication/gbo4-en-lr.pdf">http://www.cbd.int/gbo/gbo4/publication/gbo4-en-lr.pdf</a>
2.a.1	<a href="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t.asp?Cl=4&amp;Top=1&amp;Lg=1">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t.asp?Cl=4&amp;Top=1&amp;Lg=1</a>
2.a.1	<a href="http://www.imf.org/external/pubs/ft/gfs/manual/">http://www.imf.org/external/pubs/ft/gfs/manual/</a>
2.a.1	<a href="http://faostat3.fao.org/download/I/IG/E">http://faostat3.fao.org/download/I/IG/E</a>
2.a.1	<a href="http://faostat3.fao.org/mes/methodology_list/E">http://faostat3.fao.org/mes/methodology_list/E</a>
2.c.1	<a href="http://www.fao.org/giews/food-prices/indicators/all/en/">http://www.fao.org/giews/food-prices/indicators/all/en/</a>
5.a.1	<a href="http://genderstats.org/EDGE">http://genderstats.org/EDGE</a>
6.5.2	<a href="http://transboundarywater.geo.orst.edu/database/interfreshtreatdata.html">http://transboundarywater.geo.orst.edu/database/interfreshtreatdata.html</a>
6.5.2	<a href="http://www.transboundarywaters.orst.edu/research/RBO/RBO_Database.html">http://www.transboundarywaters.orst.edu/research/RBO/RBO_Database.html</a>
7.1.2	<a href="http://www.who.int/indoorair/guidelines/hhfc/en/">http://www.who.int/indoorair/guidelines/hhfc/en/</a>
9.1.2.	<a href="http://lpi.worldbank.org/">http://lpi.worldbank.org/</a>
10.1.1	<a href="http://myweb.uiowa.edu/fsolt/swiid/swiid.html">http://myweb.uiowa.edu/fsolt/swiid/swiid.html</a>

지표	참고 사이트
10.1.1	<a href="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income/">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income/</a>
10.1.1	<a href="http://www.worldbank.org/research/growth/dddeisqu.htm">http://www.worldbank.org/research/growth/dddeisqu.htm</a>
10.1.1	<a href="http://www.worldbank.org/research/inequality/data.htm">http://www.worldbank.org/research/inequality/data.htm</a>
10.1.1	<a href="http://www.wider.unu.edu/wiid/wiid.htm">http://www.wider.unu.edu/wiid/wiid.htm</a>
10.1.1	<a href="http://www.worldbank.org/research/inequality/data.htm">http://www.worldbank.org/research/inequality/data.htm</a>
10.1.1	<a href="http://www.cgdev.org/blog/palma-vs-gini-measuring-post-2015-inequality">http://www.cgdev.org/blog/palma-vs-gini-measuring-post-2015-inequality</a>
10.1.1	<a href="http://www.un.org/esa/socdev/documents/reports/InequalityMatters.pdf">http://www.un.org/esa/socdev/documents/reports/InequalityMatters.pdf</a>
10.3.1	<a href="http://ec.europa.eu/public_opinion/archives/ebs/ebs_393_en.pdf">http://ec.europa.eu/public_opinion/archives/ebs/ebs_393_en.pdf</a>
10.3.2	<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NHRI/Chart_Status_NIs.pdf</a>
10.3.2	<a hre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HRIndicators/NHRI_May2014_map.pd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HRIndicators/NHRI_May2014_map.pdf</a>
10.7.2	<a href="http://www.iom.int/files/live/sites/iom/files/pbn/docs/behind-numbers.html">http://www.iom.int/files/live/sites/iom/files/pbn/docs/behind-numbers.html</a>
10.b.1	<a href="http://unctad.org/en/Pages/DIAE/Research%20on%20FDI%20and%20TNCs/Global-Investment-Trends-Monitor.aspx">http://unctad.org/en/Pages/DIAE/Research%20on%20FDI%20and%20TNCs/Global-Investment-Trends-Monitor.aspx</a>
10.b.1	<a href="http://unctad.org/en/pages/publicationwebflyer.aspx?publicationid=937">http://unctad.org/en/pages/publicationwebflyer.aspx?publicationid=937</a>
10.b.1	<a href="http://unctad.org/en/pages/aldc/Least%20Developed%20Countries/The-Least-Developed-Countries-Report.aspx">http://unctad.org/en/pages/aldc/Least%20Developed%20Countries/The-Least-Developed-Countries-Report.aspx</a>
10.b.1	<a href="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aldcafrica2014_en.pdf">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aldcafrica2014_en.pdf</a>
10.c.1	<a href="http://remittanceprices.worldbank.org/en">http://remittanceprices.worldbank.org/en</a>
12.3	<a href="http://www.wri.org/our-work/project/food-loss-waste-protocol">http://www.wri.org/our-work/project/food-loss-waste-protocol</a>
12.4.1	<a href="http://www2.env.go.jp/chemi/prtr/prtrdata/prtr/localstart.php">http://www2.env.go.jp/chemi/prtr/prtrdata/prtr/localstart.php</a>
12.c	<a href="http://www.iea.org/subsidy/index.html">http://www.iea.org/subsidy/index.html</a>
12.c	<a href="http://www.oecd.org/site/tadffss/">http://www.oecd.org/site/tadffss/</a>
15.1.2	<a href="http://mdgs.un.org/unsd/mdg/Metadata.aspx">http://mdgs.un.org/unsd/mdg/Metadata.aspx</a>
15.2.1	<a href="http://faostat3.fao.org/modules/faostat-download-js/PDF/EN/GF.pdf">http://faostat3.fao.org/modules/faostat-download-js/PDF/EN/GF.pdf</a>
15.4.2	<a href="http://www.fao.org/geonetwork">www.fao.org/geonetwork</a>
15.6.2	<a href="http://www.planttreaty.org/sites/default/files/IT_OWG-EFMLS-2_14_Inf3_en.pdf">http://www.planttreaty.org/sites/default/files/IT_OWG-EFMLS-2_14_Inf3_en.pdf</a>

8.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 개요

제3차 개발재원총회(‘15.7. 아디스아바바)에서 채택된 결과문서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의 성격을 지니며, 향후 15년간 개도국과 선진국들이 SDGs달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협력해야 할 분야를 포괄

총론	Post-2015 개발재원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SDGs 달성을 위해 협력 등	1~19항
본문	행동분야: 7개 분야별 이행사항	1. 국내 공공자원 2. 국내외 민간기업 및 재원 3. 국제개발협력 4. 개발동력으로서 국제무역 5. 부채 및 부채지속가능성 6. 시스템적 이슈대응 7. 과학, 기술, 혁신 및 역량강화	20-124항
종장	<b>데이터, 모니터링과 후속조치</b>	행동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125항 134항

□ 통계적 의의

‘데이터, 모니터링과 후속조치’를 행동분야 중 하나에서 대분류 항목으로 상승시킴으로써,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공개가 강조

□ 통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

- 125항: 양질의 세분화된 데이터는 Post-2015 의제와 도입수단에 대한 지원과정 등에 중요, 국가통계시스템들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세분화하면 관리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 이 시스템은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민간부문의 데이터와 분석에 의해 보완
- 126항: 성별(sex), 나이(age), 지역(geography), 소득(income), 인종(race), 민족(ethnicity), 이주 상태(migratory status), 장애(disability), 기타 국가적 맥락의 다른 특징에 의해 세분화된 시 기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양질 데이터의 증가와 활용 추구
  - 이를 위한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 국가의 통계관련 당국과 부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국제협력을 제공
  - 데이터를 강화하고 표준화할 것을 요청/ 개선된 통계지표에 대한 제안을 환영, 지속가능 발전의제 도입과 관련된 국제 통계의 타당성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와 보고를 요청
- 127항: 공개적인 전자 방식으로 정보 제공, 신뢰할 만한 데이터와 통계가 의사결정에 중요
- 128항: 서로 다른 출처로부터의 정보들을 보다 쉽게 비교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운용이 가능한 데이터 표준을 만드는 노력을 지원
- 129항: 지속가능한 발전의 진전에 대한 투명한 측정지표 개발을 요청

9. SDGs 세부목표와 관련지표 연계<sup>3)</sup>

목표	세부	목표	관련지표
1	1	최저생계비 및 빈곤을 추이	E / 지
	2	빈곤인구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최저생계비 및 빈곤을 추이	지 / 삶 / E
	3	공적연금가입율,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공적연금 수급자와 수급자 비율, 지역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급여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공적연금소득대체율, 기초생활보장수급률	삶 / 사 / E / 국
	4	에너지 빈곤층 비율 / 에너지 수급 현황	삶 / E
	4	국토현황(행정구역별, 소유자별, 지목별)	E
	5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아동 안전사고 현황, 자연재난 발생현황, 인적재난 발생현황	삶 / E
	a	사회보장부담률, 사회복지예산 / 사회복지 지출규모 / 공공복지예산비율 / 사회복지지출	사 / E / 국 / 지
	b		
2	1		
	2	유소년 영양상태	지
	3	농림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E
	4	농지면적비율 / 화학비료사용량 / 농약사용량	지
	5		
	a		
	b		
3	1	모성 사망	E
	2	성별 영아사망률 / 영아 사망 / 영아사망률 / 영아사망률	사 / E / 국 / 지
	3		
	3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 /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E / 지
	4	고혈압유병률, 당뇨유병률 / 성 및 연령별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 / 암 발생 및 사망 현황, 만성질환 현황 / 암 생존율	삶 / 사 / E / 국
	5		
	6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 도로사망률 / 자동차 사고 발생 건수 / 교통수단별 사고발생 건수와 사상자수 / 교통사고 현황(사망, 부상) / 자동차 사고 건수	국 / 삶 / 토 / 사 / E / 지
	7		
8	기대수명,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비만율,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기대수명, 건강수명 / 기대여명,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BCG]	삶 / 국 / 지	

3) \* 국=국가주요지표, 녹=녹색지표, 사=사회지표, 삶=삶의 질 지표, 지=지속가능지표, 토=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 E=E-나라지표, 공란의 경우 세부목표에 해당되는 지표가 없는 경우



목표	세부	목표	관련지표
	8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GDP 대비 국민의료비와 국민의료비 중 공공 의료비 비율,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진율과 1인당 연평균 급여액 / 의료급여 수급현황, GDP 대비 국민의료비 추이 / 국민의료비비율 / 건강보험보장률	삶 / 사 / E / 국 / 지
	9	대기오염도, 환경소음도 / 대기오염도 /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도 /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주요 대도시 환경소음도 / 광역도시별 대기오염도[서울]	국 / 토 / 사 / E / 지
	a	성 및 연령별 현재흡연율 / 흡연율	사 / 국
	b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 지역별 의료급여 대상자와 급여액	지 / 사
	c	천 명당 병상 수 (또는 의사수) / 인구 천명당 의사수, 간호사수 및 병상 수 / 의료인력 및 병상수 추이 / 사수	토 / 사 / E / 국
d			
4	1	IEA 학업성취도(TIMSS)순위, OECD 학업성취도(PISA)순위, 학업성취도 평가(교과별 성취 수준 비율) / 기초학력미달률 / 학교급별 학업성취도 / 중등학교 순졸업율	E / 국 / 사 / 지
	2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율 및 예산 추이, 유아교육 규모 / 유치원 취원율	E / 삶
	3	평생학습 참여율	E
	4		
	5	학교급 및 성별 취학률, 학업중단율, 진학률	사
	6	IEA 학업성취도(TIMSS)순위, OECD 학업성취도(PISA)순위, 학업성취도 평가(교과별 성취 수준 비율)	E
	7	학업성취도 평가(교과별 성취 수준 비율)	E
	a		
b	학자금 대출 현황,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	E	
c			
5	1		
	2		
	3		
	3		
	4		
	5	여성의원비율, 5급 이상 여성공무원비율 /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국 / 사
	5	여성국회의원 비율 /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 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국 / 사 / E
	6		
	a	국토현황(행정구역별, 소유자별, 지목별)	E
b	이동전화가입자	E	
c			

목표	세부	목표	관련지표
6	1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상수도보급률, 1인당 상수도공급량 / 상하수도 보급률 / 상수도 보급률 / 광역 상수도, 상수도 급수 현황	지 / 국 / 토 / 사 / E
	2		
	3	하수도 보급률 / 하수도 보급률 / 상하수도 보급률 / 하수도 보급률 / 하수도 보급률 변화 추이 / 하수도 보급율	국 / 삶 / 토 / 사 / E / 지
	3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량 현황	E
	4	수자원현황	E
	5		
7	6	연안습지면적 / 갯벌면적비율 / 갯벌면적 / 연안습지(갯벌) 면적의 변동 추이 / 갯벌 면적 증감	국 / 토 / 사 / E / 지
	a	ODA 중 녹색성장 ODA	녹
	1	최종에너지 종류별 소비량 / 에너지 수급현황, 전력 수급현황	사 / E
	2	재생가능에너지비율 / 신재생에너지보급률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국 / 녹 / 토 / 사 / E
8	3		
	a		
	b		
	1	1인당 GDP / 1인당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 1인당 국내총생산(GDP) / 1인당 GDP	지 / 국 / 토 / 사
	2		
	3		
	4		
	5	임금근로자의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시간당 임금 수준 / 월 평균 근로 시간, 임금총액,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 근로시간, 근로자 평균 근로 소득 /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사 / E / 삶 / 지
	5	성별 실업률 / 실업률 추이, 고령자·청년·일반·여성 고용동향,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특수교육 대상자 취업율 / 실업률 / 실업률 / 실업률	사 / E / 국 / 삶 / 지
	6		
9	7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E / 삶
	8	산업재해현황 / 산업재해율 / 산업재해현황 / 산업재해율	사 / 삶 / E / 국
	9	관광사업 등록 및 지정 현황, 관광수지 실적	E
	10		
	a		
	b	사회복지 지출규모, 국민연금 재정현황 / 공공복지예산비율 / 사회복지지출	E / 국 / 지
	1	대중교통수송분담률, 교통비지출, 교통의 사회적비용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그린교통수송분담률 / 교통수단별 여객 수송실적 및 분담률, 화물 수송 실적 / 수송량 및 수송분담률 / 지하철, 철도 여객수송분담률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국 / 토 / 사 / E / 녹 / 지



목표	세부	목표	관련지표	
2	2	성별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사	
	3			
	4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종류별 배출량 /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온실가스배출량 /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 /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토 / 사 / E / 국 / 삶 / 녹 / 지	
	5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율 / 총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 투자 비율 / GDP대비 국내 총 R&D 지출 / GDP 대비 R&D 지출 비율	토 / E / 국 / 녹 / 지	
	a	건설투자 동향, 설비투자 동향	E	
	b	기술거래시장동향	E	
	c			
	10	1	1인당 GNI, 지니계수 / 1인당 GNI / 소득분배(GINI 계수) / 지니계수 /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삶 / 사 / E / 국 / 지
		2	균등화 중위소득	삶
		3		
4				
5				
6				
7				
a				
11	b	ODA 원조 규모 / GNI대비 ODA / GNI 대비 공적대외원조(ODA) 비율	E / 녹 / 지	
	c			
	1	주택수, 주택건설수, 주거환경만족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주택보급률 및 인구 천명당 주택수, 건설기관별 주택건설실적, 주거유형·소득계층 및 지역별 주거만족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최소 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주택수	국 / 토 / 사 / 삶 / 지	
	2	소득계층별 주거편의시설 접근성/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사/ 지	
	3	도시화율	지	
	4	문화재정비율	국	
	5	자연재난 발생현황, 인적재난 발생현황 / 자연재해피해액 / 자연재해 피해액, 인적재난발생현황 / 태풍, 호우 및 대설 발생빈도와 피해액, 황사, 폭염, 한파 발생일 수 / 자연재해 피(명)	E / 국 / 토 / 사 / 지	
	6	미세먼지 농도 / 대기오염도	삶/ 지	
	6	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 발생량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국 / 사 / E / 녹 / 지	
	7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 1인당 생활권 도시림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삶 / 토 / E / 녹 / 지	

목표	세부	목표	관련지표
	a		
	b		
	c		
12	1		
	2		
	3		
	4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 지정폐기물 발생량 /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지
	5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 폐기물 재활용률 / 폐기물 재활용률 / 폐기물 재활용 비율 / 폐기물 재활용률	E / 국 / 토 / 삶 / 지
	6		
	7		
	8		
	a		
	b	관광사업 등록 및 지정 현황, 관광수지 실적	E
	c		
13	1	자연재난발생현황, 인적재난발생현황 / 자연재해피해액, 화재피해액 / 자연재해피해액, 인적재난발생현황 / 태풍, 호우 및 대설 발생빈도와 피해액, 황사, 폭염, 한파발생일수	E / 국 / 토 / 사
	2	정부예산대비 재해예방투자, 정부 R&D 지출 중 녹색 R&D,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녹
	3		
	a		
	b		
14	1		
	2		
	3		
	4	수산자원량	지
	5	해양보호구역면적, 생태경관보존지역면적 / 자연보호지역 비율/ 보호지역 현황 / 자연보호지역 비율	국 / 토 / 사 / 지
	6		
	7	어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E
	a		
	b	어업생산량 및 양식량 / 총허용어획량소진율 / 수산자원량, 양식어업량	E / 국 / 지
	c		
15	1	생태경관보존지역면적, 산림면적 / 산림면적 / 산림률 / 산림-국유림 면적 / 산림지역 비율	국 / 사 / 토 / E / 지
	2	목재 벌채 정도	지
	3	용지 종류별 토양오염도	사
	4	국가생물종 수	지
	5		



목표	세부	목표	관련지표
	6		
	7	탈중위기종 수	지
	8		
	9		
	a		
	b		
	c		
16	1	범죄발생률 /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주요 범죄 피해율 / 총 범죄 발생 및 검거 / 범죄율, 살인범죄율 / 강력범죄 발생률 / 강력범죄 발생률 / 범죄 발생률	토 / 사 / E / 국 / 삶 / 지
	2		
	3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삶
	4		
	5		
	6		
	7	공공기관 임직원 현황	E
	8		
	9		
	10		
	a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삶
	b		
17	1		
	2	ODA 원조 규모 / GNI대비 ODA / GNI 대비 공적대외원조(ODA) 비율	E / 녹 / 지
	3		
	4		
	5		
	6		
	7		
	8	인터넷이용률 / 성 및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 인터넷이용률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PC 보유 가구비율	국 / 사 / E / 지
	9		
	10		
	11		
	12		
	13	GDP / 국내총생산 / 국내총생산	사 / E / 지
	14		
	15	ODA 원조 규모 / GNI대비 ODA / GNI 대비 공적대외원조(ODA) 비율	E / 녹 / 지
	16		
	17		
	18		
	19		